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2009. 12

성명재 · 박기백

서 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1990년대 말 외환 및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최근까지 확대일로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급진전되면서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추세와 함께 저소득·빈곤층의 생활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보호, 재교육·재훈련 등을 통한 경제적 재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복지지출의 영역과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복지지출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제와 함께 공공지출의 성과에 대한 평가문제, 그리고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총체적 국민부담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분배 및 재분배 문제 등이 개입된다. 특히 이 가운데 총체적 국민부담과 계층별 분배 및 재분배 문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민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부담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성장 및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그래왔던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기간 동안은 가족·친지간의 부양 또는 대가족 제도하에서의 상호부양 방법 등을 통해 복지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되어 왔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추세는 외환·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소

특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빈곤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가족·친지들간의 보조만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및 핵가족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의 복지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지출의 확대는 다소간 민간부문에서의 소득이전의 필요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이전이 민간부문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이전을 일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구축된다면, 공공부문의 복지정책의 성과는 구축효과만큼 과대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분배격차 확대와 그에 대응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주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민부담의 순변화를 염두에 둔 정부의 복지지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구축효과로 인한 민간부문에서의 후생감소분을 고려하여 국민경제에 미친 실질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구축효과의 검증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에 바탕을 두고 구축효과로 인한 잠재적 후생감소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보는 모의실험분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복지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정책의 순효과성과, 국민부담의 순부담의 증감에 기반한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집행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성명재 박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기백 교수의 공동연구를 통해 집필되었다. 저자들은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이준성 연구원과 변경숙 주임연구행정원을 비롯하여 연구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내외 전문가들과 익명의 두 분 심사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한편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

분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며, 다른 분들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저자들의 소신과 학문적 전문성을 토대로 집필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나타난 주장과 분석결과, 정책시사점 및 개편방향 등은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에 입각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적 곤궁을 가족의 일원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연금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의 지원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구축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적이전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이 증대되더라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통해 사적이전지출이 감소하므로 총체적 부담이 별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지지출 증가 속도(관련 세부담 증가 속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적이전지출이 사적이전지출을 구축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적이전지출이 가구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공적이전소득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해당 가구는 일시적 소득저하 상태이므로 정부 지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공적이전제도의 현황

가. 공공부조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지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에도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과 2000년에 8천억원 수준이던 예산이 2001년에는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경로연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2007년에 급격히 규모가 증가하여 3,436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사회보험

1) 연금

공적연금의 유형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눌 수 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등이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연금월액의 산정기초는 평균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이다.

근인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이 있다.

2) 기타 사회보험

연금 이외에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다. 기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노인일자리 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현물급여이고, 현금급여로는 보훈급여가 있다.

보훈급여의 종류에는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이 있으며, 유공자의 종류와 상이등급, 나이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

3. 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가구주 연령대별 분포

가. 이전소득의 분포: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2008년 전국 단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사적·공적이전소득, 시장소득·총소득·소비지출 분포를 소득계층별·연령별로 구분하

여 추정하였다. 가구당 총소득은 평균 3,932만원이고 이 중 2,708만원을 소비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208만원 수준이다. 9분위가 평균 164만원으로 가장 작고 2분위와 10분위가 각각 246만원과 247만원으로 가장 크다. 공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158만원이다.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가 각각 88만원과 70만원 수준이다. 기타사회보장수혜의 가구당 평균수혜액은 69만 7천원 수준이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관관계의 절대수준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사이의 상관관계는 전가구(2006~2008년) 대상 평균이 -0.0072 (2003~2008년 2인 이상의 경우 -0.0087)로 음(-)의 값을 가지지만 절대값이 매우 작아 0에 가깝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이전소득과 시장소득 사이에도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사적이전소득에 비해서는 상관관계의 절대수준은 다소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적이전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이에는 상관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이전소득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1분위의 사적이전소득은 약 39.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간계층인 5분위와 6분위는 각각 96.6만원 및 62.8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는 사적이전소득이 약 141.2만원 정도이다. 평균 사적이전소득 규모는 82.3만원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급여액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는 25.1만원, 중간계층인 5분위와 6분위는 각각 16.3만원, 3.7만원으로 추정된다. 최고소득층인 10분위는 0.5만원으로 추정된다. 원칙적으로 소득수준이 1분위를 벗어나는 정도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최저적용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포함됨으로써 고소득층에도 일부 현금급여 소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시장소득과 역의 관계(-0.1194)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과도 역의 상관관계(-0.0281)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할 경우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시장소득(-0.2183)과 사적이전소득(-0.0281)에 대해 공히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가. 구축효과 분석모형

1) 공여자 입장에서의 사적이전지출 추정식

$$Tr_j = \beta_0 Y_j + \beta_1 Y_p + \beta_2 Tr_{-j} + \beta_3 G_j + \beta X_j + e_j \quad (1)$$

Tr_j 는 각 가구에서 부모에게 이전하는 규모이다. Y 는 각 가구의 소득(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모소득 제외)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Y_p 는 부모의 소득이다. Tr_{-j} 는 가구원 이외로부터 부모에게 이전되는 규모, G 는 공적이전의 규모로 정부가 부모에게 현금이전하는 연금소득 및 기초생활급여, 경로연금

등을 의미한다. X 는 기타 가구의 특성으로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이다.

사적이전지출은 非陰數(non-negative)이므로 사적이전규모 결정식은 기본적으로 토빗모형의 형태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식 (1)이 음수일 때는 0으로 관측된다. 즉,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잠재 수요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만 실제의 값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Tr_j^* = \max [0, Tr_j]$$

2) 수혜자 입장에서의 사적이전지출 추정식

수혜자 입장에서 수혜받는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해당 수혜자의 시장소득과 각종 공적이전소득수혜, 그리고 각종 인적특성을 포함한 수혜자 고유의 특성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수혜자 입장에서의 사적이전소득 수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Tr_p = b_0 Y_p + b_1 Y_{-p} + b_2 G_p + b X_p + \eta_p \quad (2)$$

Tr_p 는 수혜자의 사적이전소득 수혜 규모, Y_p 와 Y_{-p} 는 각각 수혜자의 시장소득과 수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여타 가구원의 (총) 소득, G_p 는 수혜자가 수혜한 공적이전소득, X_p 는 수혜자의 특성변수이고, b 와 b_k ($k=0,1,2$)는 계수이다.

상기 식은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만약 가구기준으로 사적이전소득 수혜결정식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Tr = c_0 Y + c_2 G + c X + \eta \quad (3)$$

분석단위가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식 (2)에 포함된 타가구의 소득이 소득종류별로 분해되어 가구단위로 분산 및 재합산되기 때문이다.

나. 소비지출 효과 분석모형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각종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가계의 반응을 고려하여 정부의 이전지출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C_j = \beta_1 Y_j + \beta_2 G_j + \beta X_j + e_j$$

Y 는 각 가구의 소득으로 사적이전수입 (Tr)을 포함한다. G 는 공적이전 규모로, 연금소득 및 기초생활급여, 경로연금 등 공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현금이전을 의미한다. X 는 기타 소비자의 인적 특성 등 소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

상기의 소비지출에 대한 수식을 참조하여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rac{\partial C}{\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Tr} \frac{\partial Tr}{\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G}$$

위의 식에 따르면 정부의 이전지출로 인한 소비의 변화는 우변의 첫 번째 항에서 나타난 구축효과와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 증대 효과로 구분된다. 또한 가계의 사적이전소득 증가나 공적이전소득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정도는 동일하므로 $\frac{\partial C}{\partial Tr} = \frac{\partial C}{\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Y}$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frac{\partial C}{\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Y} \left(\frac{\partial Tr}{\partial G} + 1 \right)$$

위의 식은 공적이전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소비지출의 증가효과를 한계소비성향에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를 차감한 후의 잔여분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를 추정할 때 자연대수선형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추정계수 값이 $\frac{\partial \ln(Tr)}{\partial \ln(G)}$ 의 의미를 지닌다.

$$\beta = \frac{\partial \ln(Tr)}{\partial \ln(G)} = \frac{\partial Tr}{\partial G} \cdot \frac{G}{Tr}$$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축효과는 $\frac{\partial Tr}{\partial G} = \frac{\partial \ln(Tr)}{\partial \ln(G)} \cdot \frac{Tr}{G} = \beta \cdot \frac{Tr}{G}$ 로 변환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구축효과 및 소비지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2007년 대상)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2008년 대상)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재정패널자료와 가계조사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가구의 인적특성에서는 양자간의 차이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소득이나 소비지출 관련 통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소득·소비지출에 대한 자료조사방법상의 차이 또는 표본추출방법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재정패널자료의 주요 기술통계(2007년)

(단위: 명, 만원)

| | 평균 | 최대치 | 최소치 | 표준편차 |
|------------|------------------------|--------------------------|--------------------------|------------------------|
| 가구원 수 | 2.91 | 8 | 1 | 1.30 |
| 가구주 연령 | 50.28 | 96 | 18 | 20.91 |
| 65세 이상 노인수 | 0.35 | 3 | 0 | 0.64 |
| 20세 미만 아동수 | 0.74 | 4 | 0 | 0.94 |
| 총소득 | 3,677.59 (3,451.40) | 34,000.00 (12,000.00) | 600.00 (600.00) | 2,847.75 (2,526.08) |
| 시장소득 | 3,505.97 (3,290.39) | 34,000.00 (12,000.00) | -1,400.00 (-1,812.00) | 2,895.42 (2,587.14) |
| 소비지출 | 1,738.78 | 47,673.20 | 108.00 | 1,478.40 |
| 공적이전소득 | 26.98 | 3,160.00 | 0 | 112.24 |
| 사적이전소득 | 134.03 | 6,000.00 | 0 | 438.39 |

주: 총소득과 시장소득의 경우 () 안의 수치는 가구소득으로 분류한 통계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이며, () 밖의 수치는 개인기준 소득을 합산한 것과 가구소득 중 큰 값을 선택한 것임.

〈표 2〉 가계조사자료의 주요 기술통계(2008년)

(단위: 명, 만원)

| | 평균 | 최대치 | 최소치 | 표준편차 |
|------------|----------|-----------|--------|----------|
| 가구원 수 | 2.91 | 8 | 1 | 1.31 |
| 가구주 연령 | 50.12 | 99 | 16 | 13.89 |
| 65세 이상 노인수 | 0.33 | 3 | 0 | 0.61 |
| 20세 미만 아동수 | 0.84 | 5 | 0 | 0.99 |
| 총소득 | 3,932.41 | 30,280.53 | 331.95 | 2,547.45 |
| 시장소득 | 3,337.18 | 30,234.35 | 0.00 | 2,535.95 |
| 소비지출 | 2,401.31 | 13,114.67 | 184.88 | 1,471.52 |
| 공적이전소득 | 157.63 | 12,115.00 | 0.00 | 456.32 |
| 사적이전소득 | 207.64 | 7,706.69 | 0.00 | 561.85 |

5. 구축효과 검정 및 효과분석

가. 구축효과의 검정

1)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개인기준

재정패널자료 1차년도(2007년 대상 2008년 조사) 자료 중 소득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 외부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적이전소득 수령자의 성, 연령, 학령(더미), 해당 개인이 받은 공적이전소득과 시장소득, 타가구원의 소득과 순자산을 회귀변수로 하여 토빗모형의 설정하에서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계수 추정치는 -13.36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구축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의 절대값은 1.61에 불과하여 유의수준 10%에서조차 구축효과가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연대수를 취한 상태에서 토빗모형으로 추정한 경우(재정개인-5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자연대수를 취함에 따라 설명변수 및 종속변의 단위 및 양자간의 비례관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추정결과는 대동소이하다.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1.31, t값은 -3.19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크므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매우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2)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구기준

재정패널자료의 가구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밖으로부터 수

취한 사적이전소득을 종속변수로 삼고, 가구주의 성, 연령, 연령제
급, 학력더미, 가구규모 또는 노인가구원 수, 공적이전소득, 시장소
득, 순자산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적이전소득 수준이 증가하되 증가
율은 체감(연령제급 계수가 음수이므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는 개인기준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재정가구-5를 기준
으로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계수는 -1.46, t값은 -5.08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존재하
며,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가구기준

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회귀분석해본 결과,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수준(level)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다.

(본문의) 가계-3을 기준으로 하면, 사적이전소득은 시장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각각
의 계수는 -0.15와 -0.13으로 비슷하다. 이는 노동이나 자본의 공급
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수취하거나 공공부문으로부터 각종 연금이나
기타 수혜를 받을 때 해당소득의 13~15% 정도에 해당되는 사
적이전소득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적이전
소득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구축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다만 구축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 파급효과 분석: 희생된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효과를 중심으로

1)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구축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 수준변수를 이용해 분석하였

던 회귀식 중 재정가구-5와 자연대수회귀식 중 재정가구-10에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수준변수 회귀결과에서 계수 추정치는 -1.45이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1원 증가할 때마다 사적이전소득이 1.45원씩 비례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가구당 평균 공적이전소득이 27.06만원이므로 그에 따라 희생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39.41만원 (=27.06만원×1.45)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173.83만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총소득도 3.717만원으로 39.41만원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의실험 결과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가장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 소득계층은 1~3분위로 가구당 평균 63.7~117.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연대수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축효과에 의한 과급효과는 수준모형의 경우와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자연대수 모형을 따를 경우 구축을 통해 희생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16.12만원으로 수준모형에 비해 절반보다 조금 작다. 16.12만원은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각각 7.62만원과 8.50만원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는 가구당 평균 20.5만원으로 추정된다. 소득계층별로는 1~2분위와 10분위가 양쪽 끝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한편, 중소득층으로 갈수록 구축으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희생 정도는 작아지고 U자형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총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비지출, 저축이 각각 가구당 평균 20.5만원, 20.5만원, 12.1만원, 8.4만원씩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총소득 지니계수는 0.33971에서 0.33801로 0.00170지니p만큼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적이전소득이 친지간의 생계비 보조의 성격을 많이 띠는 만큼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구축효과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다. 정책시사점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경우와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 있어 분석 결과, 특히 그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계수 추정치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축효과 $\frac{\partial Tr}{\partial G}$ 은 0.13(가계-3 기준)로 추정되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구축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재분배 정책이 일부 누수됨을 의미한다. 이는 구축효과만큼 공공이전을 통한 정책효과가 일부 상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이전소득만을 대상으로 공공이전을 통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면 구축효과만큼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반대로 구축효과란 사전이전소득을 감축하는 만큼 이는 생계비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친지 등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지출하는 사적이전소득을 위한 부담을 포함한 총부담은 구축효과만큼 완화된다. 만약 공공지출 증대를 위해 그만큼 세금부담을 증

가시킨다면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은 공공지출 확대분에서 구축효과만큼을 차감한 부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금융 및 경제위기 이후 분배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의한 정부지출(소득이전)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가계-3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지출 증가를 위해 증가된 국민부담 증가분 중 약 13%는 사적부담 감소로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향후에도 구축효과가 종전대로 유지된다면,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증대시켜 재분배 정책의 재원을 확보할 때 그 중 일부(13%)는 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부담까지 고려하면 공공이전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더라도 일부는 구축을 통해 총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증세를 통해 증가된 세부담을 부담하는 주체와 구축을 통해 사적부담이 경감된 주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축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지난 10여년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또는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지출(또는 소득이전)이 많이 증가했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이 증가하였다. 국민부담은 흔히 조세부담 증가분만큼 증가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 때 그 중 일부가 구축효과를 통해 사적이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총체적인 국민부담의 증가효과는 구축효과만큼 상쇄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사적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공공부문의 정책효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는 구축효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구축효과를 감안한다면 순효과는 구축효과에 의한 기여도만큼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분석자료의 종류와 모형의 설정,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수치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가계-3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약 13% 정도의 크기만큼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목 차

| | |
|-----------------------------|----|
| I. 서론 | 29 |
| II. 우리나라 공적이전제도의 현황 | 32 |
| 1. 공공부조 | 32 |
| 가. 개요 | 32 |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33 |
| 다. 기초노령연금 | 38 |
| 라. 장애수당 등 기타 | 39 |
| 2. 사회보험 | 39 |
| 가. 연금 | 39 |
| 나. 기타 사회보험 | 41 |
| 3. 기 타 | 42 |
| III. 이전소득의 분포 | 43 |
| 1.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 43 |
| 가. 자료 | 43 |
| 나.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분포 | 44 |
| 다. 가구주 연령별 이전소득 분포 | 48 |
| 라. 상관관계 | 52 |
| 마. 이전소득의 변화추이: 소득계층별 변화추이 | 58 |
| 바. 이전소득의 변화추이: 가구주 연령별 변화추이 | 69 |
| 2.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 74 |
| 가. 자료 | 74 |

| | |
|----------------------------------------------|-----|
| 나. 민간이전 | 75 |
| 다. 공적이전 | 78 |
| 라. 상관관계 | 79 |
| | |
| IV.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 81 |
| 1. 이 론 | 81 |
| 가. 기존 연구에서의 모형 | 81 |
| 나. 이론 모형 | 82 |
| 다. 기존 실증연구 | 85 |
| 2. 분석모형 | 87 |
| 가. 구축효과 분석모형 | 87 |
| 나. 소비지출 효과 분석모형 | 92 |
| 3. 분석자료 | 95 |
| 가. 자료 | 95 |
| 나. 서베이자료의 주요 기술통계 | 96 |
| | |
| V. 구축효과 검정 및 효과분석 | 99 |
| 1. 구축효과의 검정 | 99 |
| 가.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개인기준 | 99 |
|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구기준 | 101 |
| 다.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가구기준 | 105 |
| 2. 파급효과 분석: 희생된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효과를 중심으로 | 106 |
| 가.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 107 |
| 나.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 110 |
| 3. 정책시사점 | 112 |

| | |
|-----------------------------|-----|
| VI. 맺음말 | 118 |
| 참고문헌 | 120 |
| 부록: 200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표 | 124 |

표목차

| | |
|--------------------------------------------|----|
| 〈표 II-1〉 연도별 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제도의 예산 추이 | 33 |
| 〈표 II-2〉 최저생계비 추이 | 35 |
| 〈표 II-3〉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2009년도) | 36 |
| 〈표 II-4〉 긴급생계급여 기준(2009년도) | 37 |
| 〈표 II-5〉 주거급여 한도액(2009년도) | 37 |
| 〈표 II-6〉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2009년도) | 38 |
| 〈표 II-7〉 기초노령연금액 추계 | 39 |
| | |
| 〈표 III-1〉 소득계층별 소득 및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 46 |
| 〈표 III-2〉 소득계층별·연령별 가구구성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 48 |
| 〈표 III-3〉 연령별 소득 및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 49 |
| 〈표 III-4〉 사적이전소득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 54 |
| 〈표 III-5〉 공적이전소득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 57 |
| 〈표 III-6〉 Shorrocks 분해(가계조사자료 소득세후 소득 기준) | 58 |
| 〈표 III-7〉 소득계층별 사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60 |
| 〈표 III-8〉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62 |
| 〈표 III-9〉 소득계층별 기타사회보장수혜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63 |
| 〈표 III-10〉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66 |
| 〈표 III-11〉 연령별 사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70 |
| 〈표 III-12〉 연령별 공적연금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71 |
| 〈표 III-13〉 연령별 기타사회보장수혜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73 |
| 〈표 III-14〉 연령별 공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 73 |
| 〈표 III-15〉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2007년 | |

| | |
|-------------------------------------------------------------|-----|
| 재정패널자료 기준) | 76 |
| 〈표 III-16〉 이전소득의 소득 및 소비지출과의 상관관계(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 80 |
| 〈표 IV-1〉 재정패널자료의 주요 기술통계(2007년) | 98 |
| 〈표 IV-2〉 가계조사자료의 주요 기술통계(2008년) | 98 |
| 〈표 V-1〉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재정패널자료 추정결과) ... | 101 |
| 〈표 V-2〉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재정패널자료 추정결과) ... | 103 |
| 〈표 V-3〉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재정패널자료 추정결과) ... | 104 |
| 〈표 V-4〉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가계조사자료 추정결과) ... | 105 |
| 〈표 V-5〉 구축효과(재정가구-5 기준) | 108 |
| 〈표 V-6〉 구축효과(재정가구-10 기준) | 109 |
| 〈표 V-7〉 구축효과(가계-3 기준) | 110 |

그림목차

| | |
|-------------------------------------------------------------|----|
| [그림 Ⅲ-1]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 | 47 |
| [그림 Ⅲ-2]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2008년 전가구 기준) …… | 47 |
| [그림 Ⅲ-3] 가구주 연령별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 50 | |
| [그림 Ⅲ-4] 가구주 연령별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2008년 전가구 기준) …… | 50 |
| [그림 Ⅲ-5] 가구주 연령별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 | 52 |
| [그림 Ⅲ-6] 사적이전소득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2008년 전가구) …… | 54 |
| [그림 Ⅲ-7] 공적연금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2008년 전가구) …… | 58 |
| [그림 Ⅲ-8]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 | 60 |
| [그림 Ⅲ-9]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공적연금수혜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 | 62 |
| [그림 Ⅲ-10]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기타사회보장수혜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 | 64 |
| [그림 Ⅲ-11]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 | 65 |
| [그림 Ⅲ-12] 주요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소득의 변화추이 (2인 이상 가구) …… | 67 |
| [그림 Ⅲ-13] 주요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소득 증감률 | |

| | | |
|-----------|------------------------------------------------|-----|
| | (2인 이상 가구) | 67 |
| [그림 Ⅲ-14] | 주요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변화추이 (2인 이상 가구) | 67 |
| [그림 Ⅲ-15] | 주요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 (2인 이상 가구) | 67 |
| [그림 Ⅲ-16] | 소득1분위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교 (2인 이상 가구) | 68 |
| [그림 Ⅲ-17] | 소득5분위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교 (2인 이상 가구) | 68 |
| [그림 Ⅲ-18] | 소득10분위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교 (2인 이상 가구) | 69 |
| [그림 Ⅲ-19] | 가구주 연령별 사적이전소득의 변화추이 (2인 이상 가구) | 71 |
| [그림 Ⅲ-20] | 가구주 연령별 공적연금의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 | 71 |
| [그림 Ⅲ-21] | 가구주 연령별 기타사회보장수혜의 변화추이 (2인 이상 가구) | 74 |
| [그림 Ⅲ-22] | 가구주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변화추이 (2인 이상 가구) | 74 |
| [그림 Ⅲ-23] | 소득분위별 시장소득(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 | 77 |
| [그림 Ⅲ-24] |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소득(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 77 |
| [그림 Ⅲ-25] |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연금제외, 2007년 재정패널 자료 기준) | 78 |
| [그림 Ⅲ-26] | 소득분위별 연금소득 규모(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 79 |
| [그림 V-1] | 소득분위별 구축효과의 분포(가계조사자료 기준) · | 111 |

I. 서론

가족, 친구, 친지간 이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흔한 현상이다¹⁾. 가족간 이전에 대한 Becker(1974)의 이타주의(altruism) 모형에 따르면 가족의 소득분포는 가구원의 소비 또는 효용과 무관하며, 오직 가족 전체의 소득만이 중요하다. 이 경우 정부의 이전지출 정책은 완전 구축되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가족간 이전이 이타주의적이지 않은 모형도 있다. Bernheim et al.(1985)은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 부모에 대한 이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이전지출 정책이 일부만 구축된다. 다시 말하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이전지출 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사적이전소득의 규모가 가구 평균 189.6만원으로 공적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가구에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 규모인 126.0만원보다 큰 상태이다. 이렇게 가족간 이전이 큰 이유는 적립식 형태인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되어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국민만이 수혜금을 받고 있어 아직 총수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공적이전소득은 1995년에 평균 11.7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47.7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적이전소득도 1995년 가구 평균 30.1만원에서 2006년에는 68.0만원으로

1) Cox and Jimenez(1990) 참조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구당 평균 총소득이 1995년 2,300.3만원, 2006년에는 4,176.1만원으로 2배 미만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사적이전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축효과가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복지지출이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복지지출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부족한 복지를 시급히 확충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적 곤궁을 가족의 일원이 부담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연금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에 민간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다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금 증대-이전지출 확대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담 증대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복지지출 증가 속도(관련 세부담 증가 속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치적 부담도 작을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직접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Jenson(2003)에서 지적하듯이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의 효과성에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축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적이전지출을 통하여 의도한 수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부의 공적이전제도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노인에 대한 정부의 의료보장 확대,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 주택구입 보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둘째, 복지지출의 효과 평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축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정부의 복지지출의 효과가 과

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복지지출의 효과는 해당 지출로 인한 소득 증가(현물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 증가 포함)로 평가하지만 구축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축효과에 의한 효과만큼을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의 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구축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보조에서 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공공이전소득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Kang & Lee(2003)와 강성진·전형준(2005) 정도가 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심층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공적이전지출 확대가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²⁾.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의 종류와 추이, 현황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가계조사자료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유형별 추이를 고찰해본다. 제Ⅳ장에서는 분석모형, 분석방법, 분석자료를 논의한다.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구축효과와 존재 여부, 구축효과와 크기 추정, 이전소득의 효과 분석을 시행한다. 아울러 구축효과를 감안하면서 공적이전소득의 효과성을 소비자후생의 차원에서 소비지출, 저축 변화 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소득이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현안과제와 분석결과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2) 공적이전지출 중 국민연금의 비중은 인구의 고령화와 수혜자 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증가는 수혜자의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는 이만우 외(2008)와 강성호 외(2008)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II. 우리나라 공적이전제도의 현황

정부가 민간에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가 존재한다. 의료 및 교육 등 공적인 현물급여³⁾가 사적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현금급여에 해당되는 이천지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급여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각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현금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표적인 현금급여에 대해 설명한다.

1. 공공부조

가. 개요

예산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지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에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999년과 2000년에 약 8천억원 수준이던 예산이 2001년에는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2001년 이후로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며 경로연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2천억원을 조금 상회하던 노령연금이 2008년에는 1조 6

3)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이천지출을 지칭한다.

II. 우리나라 공적이전제도의 현황 33

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2006년 1천억원 수준에서 2007년에 급격히 규모가 증가하여 3,436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1〉 연도별 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제도의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 생활보호 (1995~2000) | | | | | | | | |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
| 생활보호('95~2000) 기초생활보장(2001~) | 5,651 | 7,035 | 9,134 | 11,211 | 19,451 | 24,090 | | | |
| 자활근로사업 | | | | | 1,000 | 500 | | | |
| 의료급여 | 2,924 | 3,429 | 4,777 | 5,496 | 8,098 | 7,969 | | | |
| 장애수당 | 50 | 50 | 157 | 157 | 207 | 277 | | | |
| 경로연금 | - | - | - | 1,302 | 1,501 | 1,999 | | | |
| | 기초생활보장 (2001~) | | | |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생활보호('95~2000) 기초생활보장(2001~) | 32,696 | 34,034 | 35,230 | 39,127 | 46,520 | 53,758 | 65,759 | 72,643 | 71,355 |
| 자활근로사업 | 600 | 1,203 | 1,203 | 1,624 | 2,021 | 2,337 | 2,594 | 2,594 | 2,605 |
| 의료급여 | 15,897 | 16,904 | 17,617 | 18,810 | 22,148 | 26,623 | 35,766 | 37,901 | 34,179 |
| 장애수당 | 331 | 448 | 519 | 664 | 897 | 1,119 | 3,436 | 3,279 | 2,870 |
| 경로연금 | 1,999 | 2,460 | 2,145 | 2,150 | 2,126 | 2,153 | 2,177 | 15,968 | 24,697 |

주: 2009년도는 예산운용계획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2000년에 도입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생활보호제도가 기초생활보장을 담당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가구로 선정되는 조건은 비교적 복잡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기준이다. 2003년 이전까지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이었다. 2003년부터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된다. 가계조사자료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다.

2009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490,845원, 2인 가구는 835,763원, 3인 가구는 1,081,186원, 4인 가구는 1,326,609원, 5인 가구는 1,572,031원, 6인 가구는 1,817,454원이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995년 76만원 수준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2009년에는 132만원 수준이다.

II. 우리나라 공적이전제도의 현황 35

〈표 II-2〉 최저생계비 추이

(단위: 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1995 | 259,870 | 434,304 | 577,008 | 765,414 | 872,380 | 978,730 |
| 1996 | 270,426 | 451,457 | 602,297 | 793,904 | 904,594 | 1,015,564 |
| 1997 | 281,411 | 469,289 | 628,695 | 823,456 | 937,999 | 1,053,784 |
| 1998 | 292,842 | 487,824 | 656,250 | 854,107 | 972,637 | 1,093,442 |
| 1999 | 314,574 | 520,984 | 716,579 | 901,357 | 1,024,843 | 1,156,441 |
| 2000 | 324,011 | 536,614 | 738,076 | 928,398 | 1,055,588 | 1,191,134 |
| 2001 | 333,731 | 552,712 | 760,218 | 956,250 | 1,087,256 | 1,226,868 |
| 2002 | 345,412 | 572,058 | 786,827 | 989,719 | 1,125,311 | 1,269,809 |
| 2003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 2004 | 368,226 | 609,842 | 838,797 | 1,055,090 | 1,199,637 | 1,353,680 |
| 2005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 2006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2007 | 432,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 2008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 2009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주: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2,062,877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둘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다른 가구에 거주할 수도 있으므로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부양의무자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를 생각하면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나는 사적이전소득은 주로 부양의무자가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총 7종류의 급여가 있다. 이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는 현금급여로 이루어진다. 여타

급여는 대부분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된다.

①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로 구성되며, 일반생계급여가 주를 이룬다. 일반생계급여 대상자는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이다. 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령 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을 의미한다.

〈표 II-3〉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2009년도)

(단위: 원/월)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최저생계비(A)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타 지원액(B) | 84,964 | 141,156 | 181,138 | 221,121 | 261,103 | 301,085 |
| 현금급여 기준(C=A-B) | 405,881 | 694,607 | 900,048 | 1,105,488 | 1,310,928 | 1,516,369 |
| 주거급여액(D) | 84,654 | 144,140 | 186,467 | 228,794 | 271,120 | 313,447 |
| 생계급여액(E=C-D) | 321,227 | 550,467 | 713,581 | 876,694 | 1,039,808 | 1,202,922 |

주: 1.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2.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 가구 : 1,721,810원)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II. 우리나라 공적이전제도의 현황 37

〈표 II-4〉 긴급생계급여 기준(2009년)

(단위: 월/원)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지급액 | 184,558 | 314,247 | 406,526 | 498,805 | 591,084 | 683,363 |

주: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92,279원씩 증가

②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이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지급한다. 최저생계비 중에서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하며, 기존의 정액급여에서 현재는 가구별 0원부터 최저주거비까지의 정률급여로 지급한다.

현금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급여한도액이 월 84,654원, 2인 가구는 월 144,140원, 3인 가구는 월 186,467원, 4인 가구는 월 228,794원, 5인 가구는 월 271,120원, 6인 가구는 월 313,447원의 한도액 사이에서 지급된다. 현물급여는 1인 가구는 월 8,000원, 2인 가구는 13,000원, 3인 가구는 18,000원, 4인 가구는 22,600원, 5인 가구는 26,000원, 6인 가구는 30,000원, 7인 가구는 35,000원을 지급한다.

〈표 II-5〉 주거급여 한도액(2009년도)

(단위: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최저생계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주거급여 한도액 | 84,654 | 144,140 | 186,467 | 228,794 | 271,120 | 313,447 |

주: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③ 교육급여의 경우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만9천원/인)와 학용품비(4만5천원/인)로 1년에 152,000원까지 지급된다. 중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3만3천원/인), 학용품비(4만5천원/인) 등 1년에 78,000원이 지급된다.

해산급여는 출산 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4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이 지급된다.

④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부조 방식으로 의료비를 현물급여로 지급한다.

⑥ 해산급여는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과 쌍둥이 출산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⑦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가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로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되는 한시적인 공적부조 제도이다. 향후에 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6〉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2009년도)

(단위: 원/월)

|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
| 선정기준액 | 680,000 | 1,088,000 |

주: 1. 노인단독 :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노인부부 :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배우자 연령은 무관)가 있는 경우

II. 우리나라 공적이전제도의 현황 39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가 된다. 연금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2009년 1~3월 연금액은 노인 단독 월 84,000원, 노인부부 월 134,160원이다.

〈표 II-7〉 기초노령연금액 추계

(단위: 원/월)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A값 ¹⁾ | 1,670,000 | 1,740,000 | 1,780,000 | 1,800,000 | 1,820,000 |
| 연금액 | 84,000 | 87,000 | 89,000 | 90,000 | 91,000 |

주: 1) A값 - 국민연금 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라. 장애수당 등 기타

장애수당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과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 포함된다.

지급금액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2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2. 사회보험

가. 연금

공적연금의 유형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분할지급),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2013년부터 연령이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됨)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다.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구하고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종전소득의 약 60%를 보전한다.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며(지급률 100%), 20년 초과시에는 1년마다 5%씩 지급률이 증가한다. 가급연금액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눌 수 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최대 보수월액의 76%까지 지급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연금월액의 산정기초는 평균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이다.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군인연금 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이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군인연금의 퇴직연금 월액은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50% 상당액을 지급하며 재직기간 매 1년마다 2%포인트씩 가산되고, 최고 평균보수월액의 76%(재직기간 33년시)를 지급한다.

나. 기타 사회보험

연금 이외에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취직 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그 밖에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지원하여 교통비, 식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훈련을 수강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50~100%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 등 학자금에 대하여 연 1.5%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일급(日給)개념으로 사용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을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원하는 현물급여이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3. 기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노인일자리 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현물급여이다. 현금급여로는 보훈급여가 있다.

보훈급여의 종류로는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이 있으며, 유공자의 종류와 상이등급, 나이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 보훈급여 월지급액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상이군경의 경우에는 보상금과 간호수당을 합하여 매월 지급한다.

Ⅲ. 이전소득의 분포

본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각종 사적·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연령별 분포와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1.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가. 자료

가계조사 원시자료는 기간별 자료의 포괄범위와 자료의 제공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성의 오류에 의한 편의(composition bias)가 발생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본래 가계조사자료의 원시자료는 1982년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2002년까지는 근로자외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소득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소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근로자외가구의 총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총소득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까지 병렬하여 추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구유형별로 패턴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해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구의 이전소득 분포패턴이 근로자외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가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이전소득 분포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2003년부터의 기간에 한정한다.

2003~2005년 가계조사자료는 전국단위의 2인 이상 가구를 자료포

팔대상으로 한다.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포괄범위를 사실상 전국단위의 전가구로 확대하였다⁴⁾. 그런데 2003~2005년 자료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분석대상 가구의 범위를 전국단위의 2인 이상 가구로 한정하였다.

나.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분포

2008년 전국단위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사적·공적이전소득과 시장소득⁵⁾·총소득·소비지출 분포를 소득계층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가구당 총소득은 평균 3,932만원이고 이 중 2,708만원을 소비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약 0.62로 추정된다.

총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의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총소득 구성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시장소득으로 총소득의 90.7%를 차지한다. 그리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5.3%와 4.0%를 차지한다.

시장소득 분포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치가 커지는 분포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사적·공적이전소득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208만원 수준인데 9분위가 평균 164만원으로 가장 작고 2분위와 10분위가 각각 246만원과 247만원으로 가장 크다. 공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158만원이고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가 각각 88만원과 70만원 수준이다. 공적연금은 다소의 등락

-
- 4) 여전히 농림어업 등에 종사하는 농·림·어가 등은 제외되어 있다. 아울러 여관·여인숙 등과 같이 숙박에 종사하는 가구 등도 제외되어 있다. 다행히 이들 가구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전국단위의 전가구로 분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 5) 시장소득은 본원 요소의 시장에서 노동 및 자본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을 보이기는 하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 수혜금액이 커지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공적연금의 수혜연령층이 대부분 고령층이다. 그런데 소득계층별 연령분포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령자 가구의 비율이 높다. <표 Ⅲ-1>에서 보듯이 2008년 가계조사자료 원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가구는 전체의 24.1%이다. 그런데 최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의 비율이 해당 분위의 1/2~3/4에 이를 정도로 노인가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만약 공적연금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구주 연령별 가구분포 구조만을 놓고 볼 때 저소득층일수록 공적연금 수혜가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분포가 고소득층일수록 수혜 수준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고령자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차 성숙단계로 접어들수록 공적연금의 분포구조는 <표 Ⅲ-1>에서 나타난 것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고소득층일수록 공적연금 수혜규모가 커지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 등의 성숙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 수혜규모 자체는 각출단계의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세대간 소득 사이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 측면에 부합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공적연금과 소득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공적연금이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도 커지는 경향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기타사회보장수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현금급여분)와 실업급여 등이 주된 항목 구성이다. 가계조사자료에는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곤란하지만 이들 항목들은 대부분 극빈층 또는 실직자 등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전지출항목이다.

기타사회보장수혜의 가구당 평균수혜액은 69만 7천원 수준이다. 1분위가 140만원, 4분위 64만원, 7분위 52만원, 10분위 36만원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수혜금액이 작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강제저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과 저소득·빈곤층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사회보장수혜가 서로 대조적인 분포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각종 이전소득의 총소득 대비 비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예외없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분위의 경우에는 이전소득 의존도(비중)가 39.6%로 매우 높지만 10분위의 경우에는 4.7%에 불과할 정도로 이전소득 의존도가 낮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Ⅲ-1〉 소득계층별 소득 및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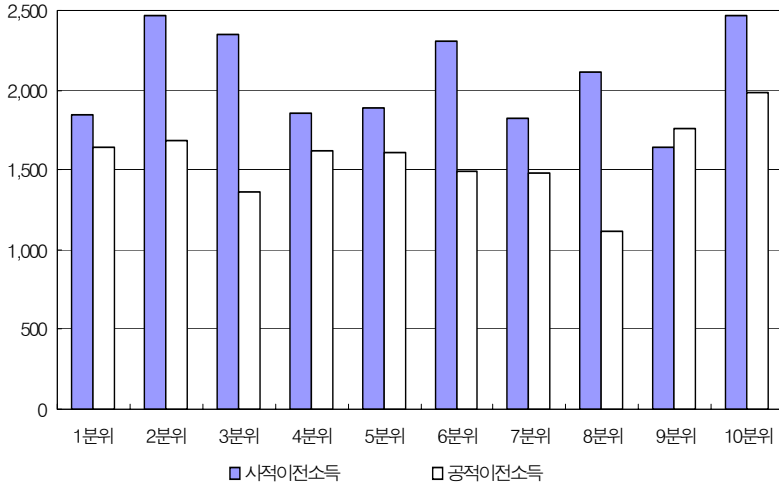
(단위: 천원,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 시장소득 | 5,336 | 10,976 | 17,269 | 23,022 | 28,425 | 33,679 | 40,409 | 48,296 | 59,368 | 89,950 | 35,671 |
| 사적이전소득 | 1,848 | 2,464 | 2,350 | 1,854 | 1,888 | 2,302 | 1,828 | 2,119 | 1,644 | 2,468 | 2,076 |
| 공적연금 | 240 | 631 | 582 | 978 | 938 | 930 | 955 | 783 | 1,123 | 1,630 | 879 |
| 기타사회보장수혜 | 1,404 | 1,058 | 786 | 639 | 669 | 559 | 521 | 338 | 639 | 360 | 697 |
| 공적이전소득 계 | 1,644 | 1,688 | 1,368 | 1,617 | 1,606 | 1,490 | 1,476 | 1,121 | 1,762 | 1,989 | 1,576 |
| 이전소득 계 | 3,492 | 4,152 | 3,718 | 3,471 | 3,495 | 3,792 | 3,304 | 3,240 | 3,406 | 4,457 | 3,653 |
| 총소득 | 8,828 | 15,128 | 20,987 | 26,492 | 31,920 | 37,471 | 43,713 | 51,535 | 62,774 | 94,407 | 39,324 |
| 소비지출 | 9,898 | 15,656 | 18,874 | 21,944 | 24,060 | 27,114 | 29,878 | 34,083 | 38,673 | 50,575 | 27,076 |
| 총소득 대비 비율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시장소득 | 60.44 | 72.55 | 82.28 | 86.9 | 89.05 | 89.88 | 92.44 | 93.71 | 94.57 | 95.28 | 90.71 |
| 사적이전소득 | 20.93 | 16.29 | 11.20 | 7.00 | 5.92 | 6.14 | 4.18 | 4.11 | 2.62 | 2.61 | 5.28 |
| 공적연금 | 2.72 | 4.17 | 2.77 | 3.69 | 2.94 | 2.48 | 2.19 | 1.52 | 1.79 | 1.73 | 2.24 |
| 기타사회보장수혜 | 15.90 | 6.99 | 3.75 | 2.41 | 2.09 | 1.49 | 1.19 | 0.66 | 1.02 | 0.38 | 1.77 |
| 공적이전소득 계 | 18.63 | 11.16 | 6.52 | 6.10 | 5.03 | 3.98 | 3.38 | 2.17 | 2.81 | 2.11 | 4.01 |
| 이전소득 계 | 39.56 | 27.45 | 17.72 | 13.1 | 10.95 | 10.12 | 7.56 | 6.29 | 5.43 | 4.72 | 9.29 |
| 총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지출 | 76.19 | 74.16 | 70.55 | 69.03 | 65.66 | 64.84 | 62.35 | 61.62 | 57.84 | 51.27 | 61.56 |

Ⅲ. 이전소득의 분포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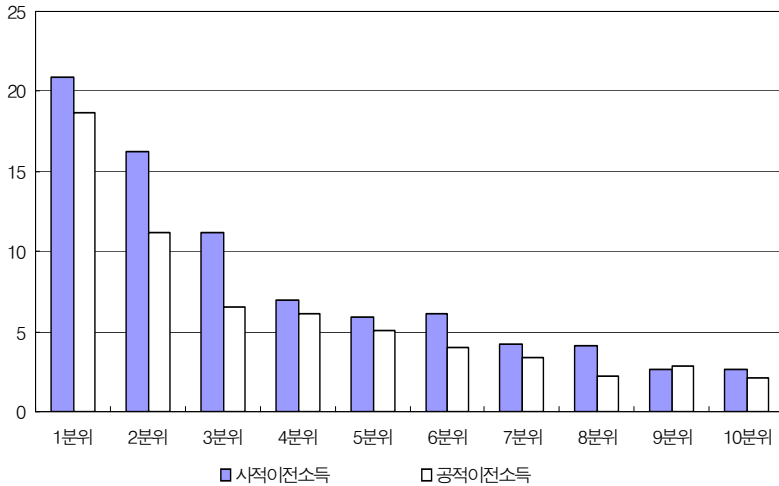
[그림 Ⅲ-1]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단위: 천원)



[그림 Ⅲ-2]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2008년 전가구 기준)

(단위: %)



〈표 Ⅲ-2〉 소득계층별·연령별 가구구성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단위: %)

| 연령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전체 |
|-------|-------|-------|-------|-------|-------|-------|-------|-------|-------|-------|-------|
| ~19.9 | 0 | 0.42 | 0.20 | 0.39 | 0 | 0.19 | 0 | 0 | 0 | 0 | 0.12 |
| ~24.9 | 0.68 | 1.68 | 2.57 | 1.75 | 1.18 | 0.19 | 0.19 | 0.18 | 0 | 0 | 0.81 |
| ~29.9 | 0.45 | 4.20 | 4.74 | 5.83 | 3.93 | 5.04 | 4.21 | 3.14 | 0.88 | 0 | 3.24 |
| ~34.9 | 0.90 | 2.31 | 4.74 | 6.02 | 10.81 | 11.19 | 10.73 | 8.67 | 9.17 | 7.92 | 7.43 |
| ~39.9 | 2.04 | 4.41 | 12.25 | 14.95 | 16.5 | 18.84 | 15.71 | 18.82 | 17.28 | 12.52 | 13.65 |
| ~44.9 | 3.62 | 6.51 | 14.43 | 8.93 | 15.13 | 17.35 | 18.01 | 19.19 | 19.40 | 18.42 | 14.42 |
| ~49.9 | 4.98 | 9.87 | 11.86 | 14.76 | 14.15 | 14.93 | 18.39 | 18.82 | 21.16 | 22.28 | 15.43 |
| ~54.9 | 5.20 | 10.92 | 8.50 | 10.87 | 10.81 | 11.75 | 12.07 | 13.47 | 16.75 | 18.78 | 12.12 |
| ~59.9 | 7.01 | 7.77 | 10.28 | 10.49 | 8.64 | 6.16 | 7.85 | 7.75 | 8.11 | 12.34 | 8.67 |
| 60~ | 75.11 | 51.89 | 30.43 | 26.02 | 18.86 | 14.37 | 12.84 | 9.96 | 7.23 | 7.73 | 24.12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다. 가구주 연령별 이전소득 분포

가구주 연령별 총소득 분포는 〈표 Ⅲ-3〉에 추정된 바와 같다. 50대 초반이 4,703만원으로 평균 총소득이 가장 높다. 이보다 연령이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면 평균소득도 낮아지는 역U자형 분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는 50대 초반과의 평균소득 차이가 10% 미만으로 그 차이가 비교적 근소하다.

취업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50대 후반의 연령층에서는 총소득 중에서 시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한다. 반면에 취업전 연령층 또는 은퇴후 연령층인 20대 초반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시장소득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사적이전소득은 취업비율이 높은 20대 후반~5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 대체로 200만원 이하(예외 40대 후반 209만원)이하의 수준을 나타

Ⅲ. 이전소득의 분포 49

내는 반면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가구당 평균이 각각 458만원과 278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높다. [그림 Ⅲ-3]에서 보듯이 사적이전소득의 연령별 분포는 역U자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별 분포 곡선([그림 Ⅲ-4])도 이전소득 총액분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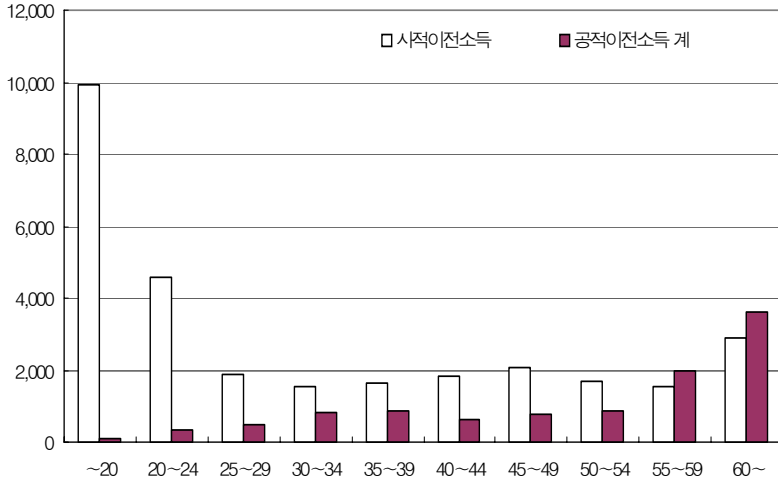
〈표 Ⅲ-3〉 연령별 소득 및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 시장소득 | 11,309 | 18,221 | 29,604 | 42,517 | 41,656 | 44,282 | 43,076 | 44,481 | 37,044 | 18,032 | 35,671 |
| 사적이전소득 | 9,945 | 4,578 | 1,897 | 1,555 | 1,655 | 1,810 | 2,088 | 1,686 | 1,523 | 2,870 | 2,076 |
| 공적연금 | 0 | 0 | 103 | 227 | 188 | 71 | 181 | 367 | 1,424 | 2,505 | 879 |
| 기타사회보장수혜 | 94 | 327 | 362 | 595 | 672 | 577 | 576 | 496 | 553 | 1,086 | 697 |
| 공적이전소득 계 | 94 | 327 | 465 | 823 | 860 | 649 | 757 | 863 | 1,977 | 3,591 | 1,576 |
| 이전소득 계 | 10,039 | 4,905 | 2,362 | 2,377 | 2,515 | 2,459 | 2,845 | 2,549 | 3,500 | 6,462 | 3,653 |
| 총소득 | 21,347 | 23,126 | 31,966 | 44,894 | 44,172 | 46,741 | 45,921 | 47,030 | 40,544 | 24,494 | 39,324 |
| 소비지출 | 13,232 | 18,799 | 22,407 | 29,056 | 28,667 | 30,721 | 30,946 | 29,665 | 26,389 | 18,109 | 27,076 |
| 총소득 대비 비율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시장소득 | 52.98 | 78.79 | 92.61 | 94.7 | 94.31 | 94.74 | 93.8 | 94.58 | 91.37 | 73.62 | 90.71 |
| 사적이전소득 | 46.58 | 19.8 | 5.93 | 3.46 | 3.75 | 3.87 | 4.55 | 3.59 | 3.76 | 11.72 | 5.28 |
| 공적연금 | 0 | 0 | 0.32 | 0.51 | 0.43 | 0.15 | 0.39 | 0.78 | 3.51 | 10.23 | 2.24 |
| 기타사회보장수혜 | 0.44 | 1.42 | 1.13 | 1.33 | 1.52 | 1.24 | 1.25 | 1.05 | 1.36 | 4.43 | 1.77 |
| 공적이전소득 계 | 0.44 | 1.42 | 1.45 | 1.83 | 1.95 | 1.39 | 1.65 | 1.84 | 4.88 | 14.66 | 4.01 |
| 이전소득 계 | 47.02 | 21.21 | 7.39 | 5.3 | 5.69 | 5.26 | 6.2 | 5.42 | 8.63 | 26.38 | 9.29 |
| 총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지출 | 59.1 | 76.59 | 63.83 | 61.52 | 62.71 | 63.73 | 64.48 | 58.59 | 58.19 | 58.13 | 61.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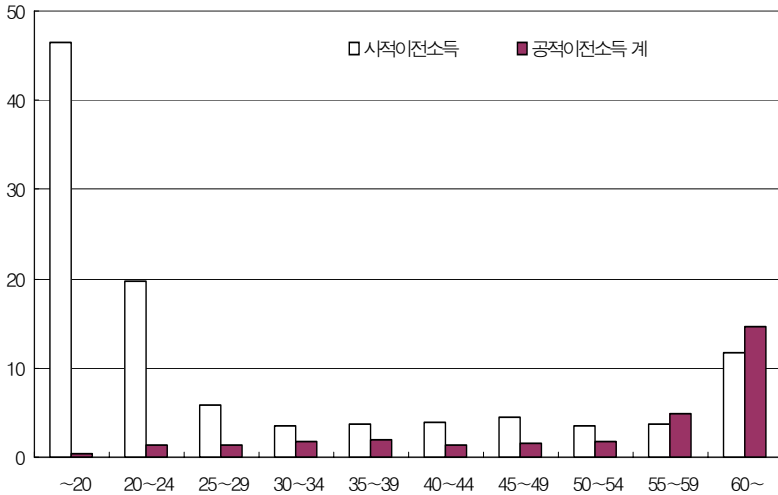
[그림 III-3] 가구주 연령별 이전소득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단위: 천원)



[그림 III-4] 가구주 연령별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 (2008년 전가구 기준)

(단위: %)



공적연금 은 대체로 은퇴 후에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40대 후반까지는 미미하다가 은퇴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50대 후반부터 수혜평균이 급상승하여 60대 이상에서는 가구당 평균 251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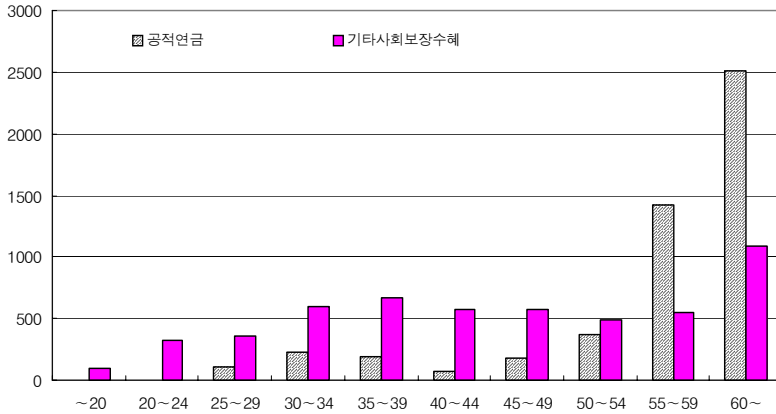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현금급여), 실업급여 등이 대중을 이루는 기타 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다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분포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5]에서 보듯이 기타사회보장수혜 분포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막대의 높이가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고령층에서의 각종 연금가입률이 낮아 아직 각종 공적연금제도가 노후생활 보장에 있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소득 빈곤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⁶⁾에서 빈곤층 등에 주로 지급되는 기타사회보장수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고령층에서 기타사회보장수혜 규모가 큰 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여 이들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의 보호하에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여 수혜대상 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기타사회보장수혜를 통한 고령층의 수혜금 규모가 점차 작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시장소득과 총소득분포는 연령대별로 역U자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대체로 U자 형태의 분포구조를 시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6)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소득분위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의 비율은 75.1%이다. 2분위의 경우에는 51.9%이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서는 노인가구의 점유비중이 절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은퇴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가 된다.

[그림 Ⅲ-5] 가구주 연령별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분포(2008년 전가구 기준)

(단위: 천원)



라. 상관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적이전소득의 분포는 소득계층별로 들쭉날쭉하며, 공적이전소득은 성격에 따라 공적연금은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 기타사회보장수혜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내었다. 그런데 소득계층의 구분이 이들 이전소득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총소득과 이전소득 사이에는 이미 내생성이 개입되어 있다. 우리나라 이전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적절한 비교는 이전소득 이전단계의 시장소득과의 상관관계 및 이전소득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⁷⁾.

7) 시장소득과 이전소득 간에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쌍방간에 모두 인과관계(causality)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연구방법론이나 분석에 사용된 서베이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고려할 때,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연구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가계조사자료의 시계열적 기준 통일을 위해 전국단위 전가구에 대해서는 2006~2008년, 전국단위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2003~2008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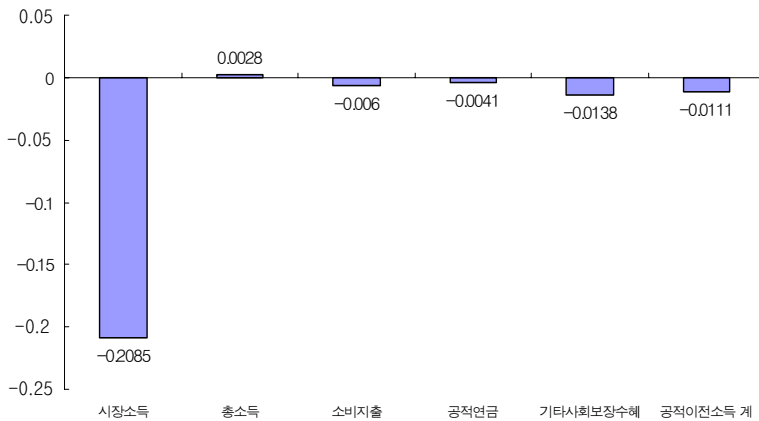
먼저 사적이전소득과 여타 요소에 대한 상관계수를 추정해 보았다 (<표 Ⅲ-4> 참조). 사적이전소득은 시장소득과 항상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과 자본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시장소득이 작을수록 통계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더 커진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시 말하면, 시장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및 친지의 생활비 등 물질적 지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분석기간이 다소 상이하지만 1인 가구까지 포함한 경우가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시장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단독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저소득층의 비율도 2인 이상 가구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소득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의 상관성이 더 크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또한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로 낮은 경우에 부모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규모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4〉 사적이전소득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 | | 시장소득 | 총소득 | 소비지출 | 공적이전소득 | | |
|-------------|------|---------|--------|---------|---------|---------|---------|
| | | | | | 공적연금 | 기타 수혜 | 계 |
| 전가구 | 2006 | -0.2068 | 0.0041 | -0.0380 | -0.0157 | -0.0165 | -0.0224 |
| | 2007 | -0.1957 | 0.0198 | -0.0139 | -0.0017 | -0.0113 | -0.0071 |
| | 2008 | -0.2085 | 0.0028 | -0.0060 | -0.0041 | -0.0138 | -0.0111 |
| | 산술평균 | -0.2037 | 0.0089 | -0.0193 | -0.0072 | -0.0139 | -0.0135 |
| 2인 이상 가구 | 2003 | -0.1943 | 0.0234 | -0.0074 | -0.0164 | 0.0018 | -0.0140 |
| | 2004 | -0.1986 | 0.0440 | 0.0128 | -0.0120 | -0.0049 | -0.0127 |
| | 2005 | -0.1862 | 0.0393 | 0.0041 | -0.0069 | -0.0064 | -0.0092 |
| | 2006 | -0.2044 | 0.0150 | -0.0260 | -0.0177 | -0.0110 | -0.0208 |
| | 2007 | -0.1929 | 0.0341 | 0.0023 | -0.0003 | -0.0030 | -0.0017 |
| | 2008 | -0.2067 | 0.0166 | 0.0126 | 0.0010 | -0.0098 | -0.0046 |
| | 산술평균 | -0.1972 | 0.0287 | -0.0003 | -0.0087 | -0.0055 | -0.0105 |

[그림 Ⅲ-6] 사적이전소득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2008년 전가구)



Ⅲ. 이전소득의 분포 55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관관계의 절대수준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는 0보다는 크지만, 완벽한 구축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여타 변수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상관관계의 추정만으로는 구축효과가 확실히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사이의 상관관계는 전가구(2006~2008년) 대상 평균이 -0.0072(2003~2008년·2인 이상 가구의 경우 -0.0087)로 음(-)의 값을 가지지만 절대값이 매우 작아 0에 가깝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공적연금의 수급자는 과거 안정적 직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산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적이전이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적이전소득과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이에도 역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의 절대수준은 작지만 공적연금보다는 다소 크다. 단독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상관관계수의 평균(2006~2008년·전가구)은 -0.0139로 2인 이상 가구의 -0.0055(2003~2008년·2인 이상 가구)보다 상당히 크다. 1인 가구의 경우에 사적이전소득과 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적이전소득 간에는 전자가 가족·친지간 생계비 보조에 대한 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과 시장소득 사이에도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시장소득이 평균보다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평균보다 큰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적

이전소득에 비해서는 상관관계의 절대수준은 다소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적이전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구성요소인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이에는 상관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들 두 항목은 시장소득과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관관계의 강도, 즉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후자(2006~2008년·전가구 0.1486)가 전자(2006~2008년·전가구 0.0792)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주된 수혜대상자가 주로 은퇴 후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경상)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시장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기타사회보장수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또는 실업급여 등과 같이 저소득·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장소득과의 부(-)의 상관관계가 공적연금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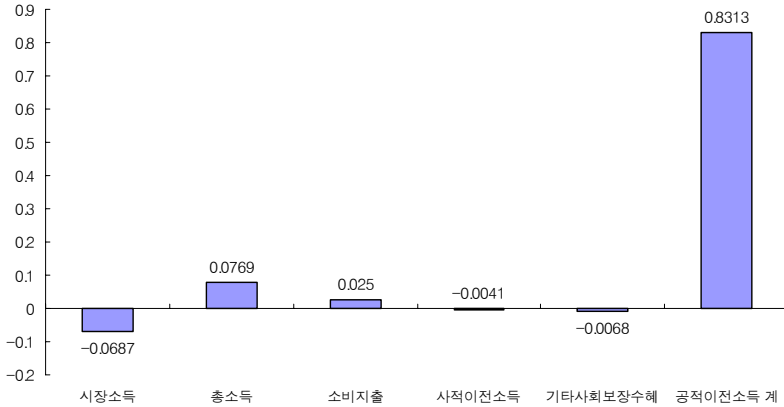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 총소득과는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각 소득구성 항목별로 분산기여도를 계산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모두 분산기여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암묵적으로 총소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적이전소득 중 기타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총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06~2008년·전가구 기준 상관계수 평균 -0.0566). 이는 기타사회보장수혜의 총소득계층별 분포 자체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이 작아지는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III-5〉 공적이전소득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 공적연금과 상관계수 | 시장소득 | 총소득 | 소비지출 | 사적이전 | 공적이전 | | | |
|------------|-------------|---------|---------|---------|---------|---------|---------|--------|
| | | | | | 공적연금 | 기타수혜 | 계 | |
| 전가구 | 2006 | -0.0982 | 0.0405 | 0.0077 | -0.0157 | 1 | 0.0149 | 0.7856 |
| | 2007 | -0.0707 | 0.0710 | 0.0394 | -0.0017 | 1 | -0.0014 | 0.8701 |
| | 2008 | -0.0687 | 0.0769 | 0.0250 | -0.0041 | 1 | -0.0068 | 0.8313 |
| | 산술평균 | -0.0792 | 0.0628 | 0.0240 | -0.0072 | 1 | 0.0022 | 0.8290 |
| 2인 이상 가구 | 2003 | -0.0907 | 0.0404 | 0.0313 | -0.0164 | 1 | 0.0062 | 0.9038 |
| | 2004 | -0.0632 | 0.0648 | 0.0421 | -0.0120 | 1 | 0.0072 | 0.8481 |
| | 2005 | -0.0537 | 0.0845 | 0.0346 | -0.0069 | 1 | -0.0014 | 0.8533 |
| | 2006 | -0.1113 | 0.0331 | -0.0057 | -0.0177 | 1 | 0.0077 | 0.8493 |
| | 2007 | -0.0880 | 0.0626 | 0.0261 | -0.0003 | 1 | -0.0003 | 0.8775 |
| | 2008 | -0.0981 | 0.0596 | 0.0029 | 0.0010 | 1 | -0.0030 | 0.8318 |
| | 산술평균 | -0.0842 | 0.0575 | 0.0219 | -0.0087 | 1 | 0.0028 | 0.8606 |
| | 기타수혜와 상관계수 | 시장소득 | 총소득 | 소비지출 | 사적이전 | 공적이전 | | |
| | | | | | 공적연금 | 기타수혜 | 계 | |
| 전가구 | 2006 | -0.1252 | -0.0164 | -0.0113 | -0.0165 | 0.0149 | 1 | 0.6304 |
| | 2007 | -0.1524 | -0.078 | -0.0787 | -0.0113 | -0.0014 | 1 | 0.4917 |
| | 2008 | -0.1652 | -0.0754 | -0.1035 | -0.0138 | -0.0068 | 1 | 0.5502 |
| | 산술평균 | -0.1476 | -0.0566 | -0.0645 | -0.0139 | 0.0022 | 1 | 0.5574 |
| 2인 이상 가구 | 2003 | -0.1351 | -0.0727 | -0.0888 | 0.0018 | 0.0062 | 1 | 0.4336 |
| | 2004 | -0.1380 | -0.0592 | -0.0456 | -0.0049 | 0.0072 | 1 | 0.5359 |
| | 2005 | -0.1388 | -0.0576 | -0.0493 | -0.0064 | -0.0014 | 1 | 0.5202 |
| | 2006 | -0.1543 | -0.0667 | -0.0530 | -0.0110 | 0.0077 | 1 | 0.5345 |
| | 2007 | -0.1600 | -0.0819 | -0.0830 | -0.0030 | -0.0003 | 1 | 0.4793 |
| | 2008 | -0.1671 | -0.0687 | -0.1044 | -0.0098 | -0.0030 | 1 | 0.5527 |
| | 산술평균 | -0.1489 | -0.0678 | -0.0707 | -0.0055 | 0.0028 | 1 | 0.5094 |
| | 공적이전계와 상관계수 | 시장소득 | 총소득 | 소비지출 | 사적이전 | 공적이전 | | |
| | | | | | 공적연금 | 기타수혜 | 계 | |
| 전가구 | 2006 | -0.1537 | 0.0213 | -0.0010 | -0.0224 | 0.7856 | 0.6304 | 1 |
| | 2007 | -0.1367 | 0.0234 | -0.0045 | -0.0071 | 0.8701 | 0.4917 | 1 |
| | 2008 | -0.1492 | 0.0223 | -0.0367 | -0.0111 | 0.8313 | 0.5502 | 1 |
| | 산술평균 | -0.1465 | 0.0223 | -0.0141 | -0.0135 | 0.8290 | 0.5574 | 1 |
| 2인 이상 가구 | 2003 | -0.1396 | 0.0053 | -0.0098 | -0.0140 | 0.9038 | 0.4336 | 1 |
| | 2004 | -0.1265 | 0.0233 | 0.0114 | -0.0127 | 0.8481 | 0.5359 | 1 |
| | 2005 | -0.1182 | 0.0422 | 0.0038 | -0.0092 | 0.8533 | 0.5202 | 1 |
| | 2006 | -0.1755 | -0.0072 | -0.0328 | -0.0208 | 0.8493 | 0.5345 | 1 |
| | 2007 | -0.1540 | 0.0157 | -0.0169 | -0.0017 | 0.8775 | 0.4793 | 1 |
| | 2008 | -0.1745 | 0.0115 | -0.0555 | -0.0046 | 0.8318 | 0.5527 | 1 |
| | 산술평균 | -0.1481 | 0.0151 | -0.0166 | -0.0105 | 0.8606 | 0.5094 | 1 |

[그림 III-7] 공적연금과의 상관계수(가계조사자료 기준, 2008년 전가구)



<표 III-6> Shorrocks 분해(가계조사자료 소득세후 소득 기준)

(단위: %)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 소득세 | 계 |
|------|-------|-------|------|------|------|------|-------|-----|
| 2003 | 53.10 | 43.42 | 2.81 | 7.11 | 0.21 | 0.89 | -7.53 | 100 |
| 2004 | 47.99 | 46.48 | 2.48 | 8.35 | 0.54 | 1.58 | -7.42 | 100 |
| 2005 | 45.94 | 50.09 | 1.46 | 8.36 | 0.95 | 1.34 | -8.13 | 100 |
| 2006 | 51.63 | 44.92 | 1.80 | 8.71 | 0.68 | 0.44 | -8.19 | 100 |
| 2007 | 56.31 | 43.19 | 1.32 | 6.56 | 0.69 | 0.90 | -8.97 | 100 |
| 2008 | 63.02 | 39.09 | 1.18 | 4.35 | 0.71 | 0.46 | -8.80 | 100 |

마. 이전소득의 변화추이: 소득계층별 변화추이

본항에서는 2인 이상 전국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2003~2008년의 이전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사적이전소득은 2003년 가구당 126.2만원에서 2008년 192.6만원으로 52.6%(연평균 8.8%) 증가하였다. 총소득 대비 비중은 3.6%에서 4.4%

로 소폭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2003년 가구당 69.3만원에서 2008년 163.4만원으로 135.8%(연평균 18.7%) 증가하였다. 총소득 대비 비중은 2.0%에서 3.7%로 크게 상승하였다.

사적이전소득도 비교적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저소득층에서의 사적이전소득은 상당부분 친지간의 생활비 보조의 성격을 지닌다. 중·고소득층에서의 소득이전은 학비보조 또는 증여 등의 비중도 상당히 클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2003~2008년의 소득계층별 사적이전소득 구성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비중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적이전소득의 변화가 단순히 생계비 보조를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증여·학비보조 등의 목적으로도 많이 오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⁸⁾(〈표 Ⅲ-7〉 참조).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최저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 총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11.3%에서 14.0%로 크게 증가하였다. 5분위도 3.1%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10분위는 2.1%에서 2.3%로 변화폭이 미미하다. 저소득층에서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고령자가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Ⅲ-8] 참조).

8)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분석이 곤란하다. 만약 세부적인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생계비 보조성격의 사적이전소득의 변화추이와 일반적인 증여 성격의 사적이전소득의 변화패턴이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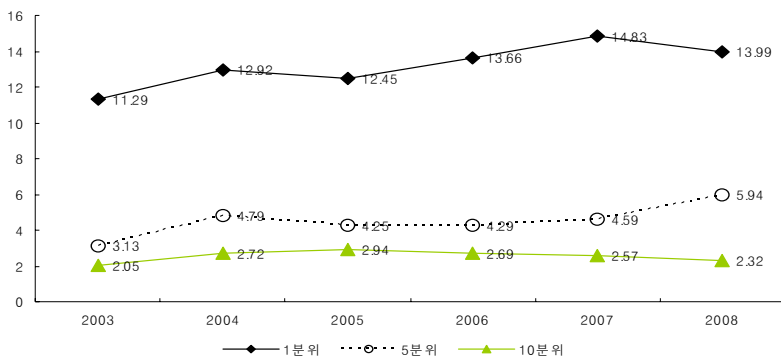
〈표 III-7〉 소득계층별 사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 2003 | 1311 | 1271 | 1321 | 939 | 943 | 1038 | 1320 | 1046 | 1846 | 1579 | 1262 |
| 2004 | 1575 | 1643 | 1646 | 1266 | 1534 | 1302 | 1352 | 1759 | 2433 | 2293 | 1680 |
| 2005 | 1533 | 2103 | 1791 | 1497 | 1409 | 1668 | 1712 | 1585 | 2169 | 2614 | 1808 |
| 2006 | 1713 | 1894 | 1961 | 1716 | 1472 | 1558 | 1529 | 1868 | 1666 | 2450 | 1783 |
| 2007 | 1842 | 1789 | 1717 | 1969 | 1626 | 1616 | 1860 | 1718 | 1971 | 2443 | 1855 |
| 2008 | 1817 | 1826 | 1816 | 1720 | 2177 | 1783 | 2131 | 1758 | 1940 | 2293 | 1926 |
| 총소득 대비 비율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11.29 | 7.09 | 5.91 | 3.59 | 3.13 | 3.05 | 3.41 | 2.33 | 3.5 | 2.05 | 3.55 |
| 2004 | 12.92 | 8.64 | 6.98 | 4.54 | 4.79 | 3.55 | 3.25 | 3.66 | 4.23 | 2.72 | 4.39 |
| 2005 | 12.45 | 10.79 | 7.29 | 5.18 | 4.25 | 4.41 | 3.97 | 3.19 | 3.61 | 2.94 | 4.54 |
| 2006 | 13.66 | 9.61 | 8.01 | 5.84 | 4.29 | 3.97 | 3.41 | 3.61 | 2.7 | 2.69 | 4.36 |
| 2007 | 14.83 | 8.94 | 6.67 | 6.44 | 4.59 | 3.97 | 4.01 | 3.2 | 3.06 | 2.57 | 4.37 |
| 2008 | 13.99 | 8.65 | 6.79 | 5.41 | 5.94 | 4.26 | 4.45 | 3.18 | 2.9 | 2.32 | 4.38 |
| 비중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10.40 | 10.07 | 10.47 | 7.45 | 7.46 | 8.23 | 10.48 | 8.29 | 14.63 | 12.52 | 100 |
| 2004 | 9.37 | 9.79 | 9.78 | 7.55 | 9.11 | 7.76 | 8.03 | 10.49 | 14.48 | 13.65 | 100 |
| 2005 | 8.47 | 11.63 | 9.92 | 8.28 | 7.80 | 9.23 | 9.45 | 8.77 | 12.00 | 14.46 | 100 |
| 2006 | 9.60 | 10.62 | 11.02 | 9.61 | 8.25 | 8.74 | 8.59 | 10.48 | 9.34 | 13.74 | 100 |
| 2007 | 9.91 | 9.66 | 9.25 | 10.63 | 8.76 | 8.70 | 10.03 | 9.28 | 10.60 | 13.19 | 100 |
| 2008 | 9.42 | 9.48 | 9.43 | 8.94 | 11.30 | 9.28 | 11.04 | 9.15 | 10.05 | 11.91 | 100 |

[그림 III-8]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단위: %)



Ⅲ. 이전소득의 분포 61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만 두 가지 이전소득 모두 여타의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빨라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3년 5.5%에서 2008년 8.1%로 확대되었다.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수혜자 비율 및 규모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의 확충 등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소득이전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Ⅲ-8〉 참조).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2003년 가구당 46.5만원에서 2008년 95.3만원으로 104.9%(연평균 15.4%) 증가하였다. 기타사회보장수혜는 같은 기간 동안 22.8만원에서 68.2만원으로 199.1%(연평균 24.5%) 증가하였다. 규모 측면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작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후자가 훨씬 크다.

소득계층별 수혜 비중은 공적연금의 경우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비중이 커지는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기타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반대로 저소득층일수록 수혜 비중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10분위의 경우 수혜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⁹⁾. 절대규모나 총소득 대비 비중 측면에서 보면 1분위의 기타사회보장수혜의 수혜 규모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시계열적으로 총소득 대비 공적연금 수혜 비중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분위는 2.5%→3.7%, 5분위는 1.6%→2.7%, 10분위는 1.0%→1.9%로 약 0.9~1.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등의 수혜자 비율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고소득층 중 일부는 공적연금의 수혜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고소득층으로 분류된 경우도 일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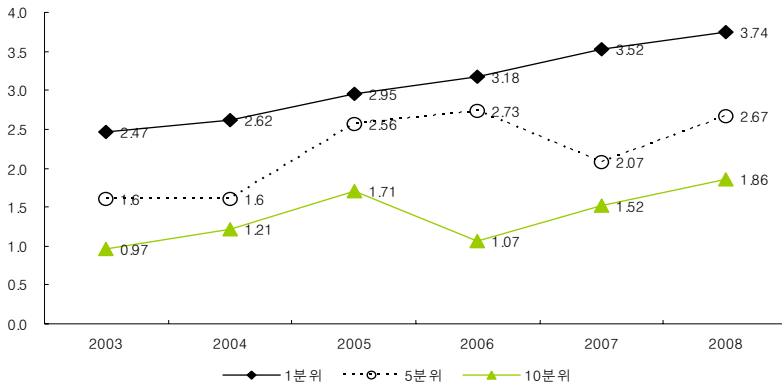
〈표 Ⅲ-8〉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 2003 | 286 | 287 | 537 | 527 | 483 | 286 | 576 | 445 | 478 | 748 | 465 |
| 2004 | 320 | 397 | 458 | 564 | 514 | 519 | 536 | 387 | 463 | 1021 | 518 |
| 2005 | 363 | 572 | 457 | 801 | 849 | 394 | 494 | 487 | 519 | 1515 | 645 |
| 2006 | 398 | 466 | 680 | 910 | 937 | 686 | 446 | 793 | 1210 | 974 | 750 |
| 2007 | 437 | 671 | 1135 | 856 | 734 | 657 | 1102 | 640 | 783 | 1443 | 846 |
| 2008 | 486 | 653 | 1033 | 920 | 977 | 964 | 785 | 1045 | 825 | 1838 | 953 |
| 총소득 대비 비율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2.47 | 1.60 | 2.40 | 2.01 | 1.60 | 0.84 | 1.49 | 0.99 | 0.91 | 0.97 | 1.31 |
| 2004 | 2.62 | 2.09 | 1.94 | 2.02 | 1.60 | 1.42 | 1.29 | 0.80 | 0.80 | 1.21 | 1.35 |
| 2005 | 2.95 | 2.94 | 1.86 | 2.77 | 2.56 | 1.04 | 1.15 | 0.98 | 0.86 | 1.71 | 1.62 |
| 2006 | 3.18 | 2.36 | 2.78 | 3.10 | 2.73 | 1.75 | 0.99 | 1.53 | 1.96 | 1.07 | 1.83 |
| 2007 | 3.52 | 3.35 | 4.41 | 2.80 | 2.07 | 1.62 | 2.37 | 1.19 | 1.22 | 1.52 | 1.99 |
| 2008 | 3.74 | 3.09 | 3.86 | 2.90 | 2.67 | 2.30 | 1.64 | 1.89 | 1.23 | 1.86 | 2.17 |
| 비중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6.16 | 6.15 | 11.54 | 11.34 | 10.34 | 6.15 | 12.4 | 9.55 | 10.26 | 16.08 | 100 |
| 2004 | 6.17 | 7.68 | 8.84 | 10.9 | 9.9 | 10.03 | 10.34 | 7.49 | 8.94 | 19.72 | 100 |
| 2005 | 5.62 | 8.87 | 7.1 | 12.41 | 13.17 | 6.11 | 7.64 | 7.55 | 8.05 | 23.5 | 100 |
| 2006 | 5.31 | 6.21 | 9.08 | 12.12 | 12.48 | 9.15 | 5.95 | 10.58 | 16.13 | 12.99 | 100 |
| 2007 | 5.16 | 7.95 | 13.41 | 10.12 | 8.67 | 7.76 | 13.03 | 7.58 | 9.24 | 17.08 | 100 |
| 2008 | 5.1 | 6.86 | 10.84 | 9.67 | 10.25 | 10.14 | 8.22 | 11 | 8.63 | 19.29 | 100 |

[그림 Ⅲ-9]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공적연금수혜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단위: %)



Ⅲ. 이전소득의 분포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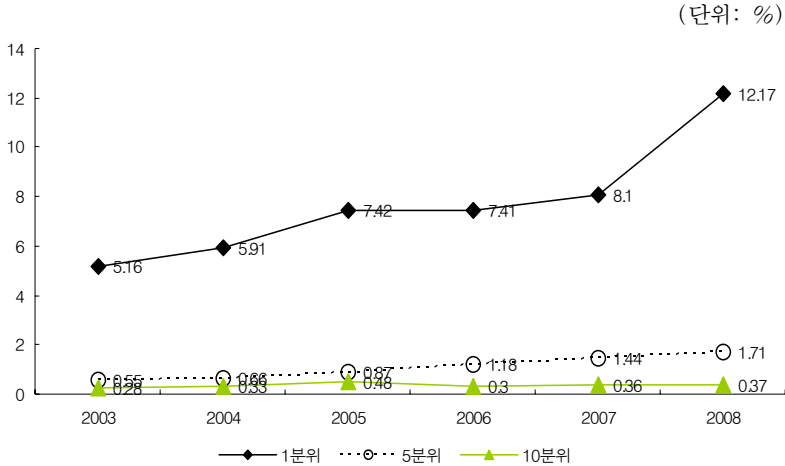
시계열적으로 보면 기타사회보장수혜의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비중의) 분포는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2008년 사이에 (실업급여, 기초생보 등) 기타사회보장수혜는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에는 총소득 대비 5.2%에서 12.2%로 급상승한 반면에 10분위는 0.3→0.4%로 차이가 거의 없다. 수혜금액의 절대수준은 저소득층일수록 압도적으로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08년의 경우 1분위는 가구당 평균 158.1만원, 10분위는 36.6만원에 불과하다(〈표 Ⅲ-9〉 참조).

〈표 Ⅲ-9〉 소득계층별 기타사회보장수혜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 2003 | 599 | 425 | 219 | 157 | 167 | 158 | 101 | 101 | 136 | 212 | 228 |
| 2004 | 720 | 484 | 351 | 269 | 212 | 155 | 277 | 251 | 156 | 281 | 316 |
| 2005 | 913 | 652 | 509 | 330 | 289 | 370 | 290 | 231 | 165 | 428 | 418 |
| 2006 | 929 | 879 | 722 | 372 | 405 | 368 | 311 | 253 | 447 | 273 | 496 |
| 2007 | 1005 | 766 | 616 | 539 | 511 | 391 | 371 | 377 | 285 | 347 | 521 |
| 2008 | 1581 | 916 | 641 | 750 | 627 | 447 | 412 | 403 | 674 | 366 | 682 |
| 총소득 대비 비율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5.16 | 2.37 | 0.98 | 0.60 | 0.55 | 0.46 | 0.26 | 0.23 | 0.26 | 0.28 | 0.64 |
| 2004 | 5.91 | 2.54 | 1.49 | 0.97 | 0.66 | 0.42 | 0.67 | 0.52 | 0.27 | 0.33 | 0.82 |
| 2005 | 7.42 | 3.35 | 2.07 | 1.14 | 0.87 | 0.98 | 0.67 | 0.47 | 0.27 | 0.48 | 1.05 |
| 2006 | 7.41 | 4.46 | 2.95 | 1.27 | 1.18 | 0.94 | 0.69 | 0.49 | 0.72 | 0.30 | 1.21 |
| 2007 | 8.10 | 3.83 | 2.39 | 1.76 | 1.44 | 0.96 | 0.80 | 0.70 | 0.44 | 0.36 | 1.23 |
| 2008 | 12.17 | 4.34 | 2.39 | 2.36 | 1.71 | 1.07 | 0.86 | 0.73 | 1.01 | 0.37 | 1.55 |
| 비중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26.34 | 18.66 | 9.64 | 6.9 | 7.33 | 6.94 | 4.43 | 4.45 | 5.98 | 9.33 | 100 |
| 2004 | 22.81 | 15.36 | 11.1 | 8.55 | 6.71 | 4.91 | 8.77 | 7.96 | 4.94 | 8.91 | 100 |
| 2005 | 21.84 | 15.61 | 12.21 | 7.91 | 6.93 | 8.86 | 6.93 | 5.54 | 3.95 | 10.24 | 100 |
| 2006 | 18.72 | 17.73 | 14.58 | 7.48 | 8.16 | 7.43 | 6.28 | 5.11 | 9.00 | 5.50 | 100 |
| 2007 | 19.28 | 14.73 | 11.82 | 10.35 | 9.81 | 7.5 | 7.12 | 7.25 | 5.46 | 6.67 | 100 |
| 2008 | 23.17 | 13.45 | 9.4 | 11.01 | 9.19 | 6.57 | 6.03 | 5.93 | 9.87 | 5.37 | 100 |

[그림 Ⅲ-10]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기타사회보장수혜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의 소득계층별 부담구조는 절대수준의 차이가 클 뿐 상대적인 분포의 모습은 유사한 면이 많다. 따라서 이들 두 항목을 합산한 공적이전소득의 상대분포 모습도 두 가지 항목의 분포 모습과 유사하다. 다만 절대금액은 공적연금의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평균금액이 더 크지만 기타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후자가 전자보다 절대수준이 크기 때문에 절대금액 분포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다(〈표 Ⅲ-8〉~〈표 Ⅲ-9〉 참조).

두 가지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의 계층별 상대분포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총소득 대비 비중의 절대수준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시계열적으로는 2003~2008년 사이에 총소득 대비 비율이 대체로 약 2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비중의 증가율 상대비는 점차 작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표 Ⅲ-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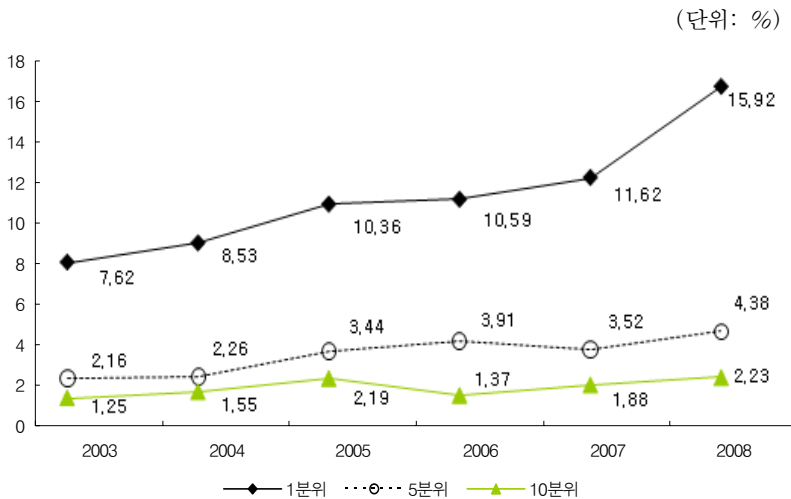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소득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다. 이는 이전

Ⅲ. 이전소득의 분포 65

소득의 총소득 대비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생계비 보조 등이 필요한 연령층(예: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과 2008년의 가계조사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1분위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비중은 35.6%에서 75.1%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노인 중 상당수가 은퇴 후인 점에 비추어볼 때 노인가구 비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이전소득 또한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전소득의 증가율은 경기여건에 따라 진폭이 확대될 뿐, 기본적으로 소득 증가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전소득 증가율이 여타의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인구의 고령화 요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Ⅲ-11] 주요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표 Ⅲ-10〉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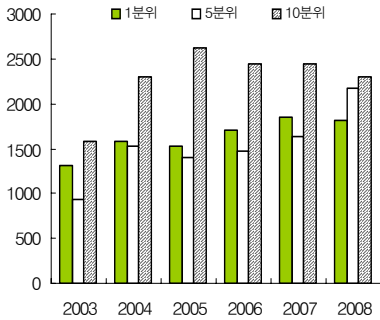
(단위: 천원,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
| 2003 | 885 | 712 | 756 | 684 | 650 | 444 | 677 | 546 | 614 | 960 | 693 |
| 2004 | 1040 | 881 | 809 | 833 | 726 | 673 | 814 | 638 | 619 | 1302 | 833 |
| 2005 | 1276 | 1224 | 967 | 1131 | 1139 | 764 | 784 | 718 | 684 | 1943 | 1063 |
| 2006 | 1327 | 1346 | 1402 | 1282 | 1341 | 1054 | 756 | 1047 | 1657 | 1247 | 1246 |
| 2007 | 1442 | 1437 | 1751 | 1394 | 1245 | 1048 | 1473 | 1017 | 1069 | 1790 | 1367 |
| 2008 | 2068 | 1569 | 1674 | 1670 | 1604 | 1410 | 1197 | 1448 | 1499 | 2204 | 1634 |
| 총소득 대비 비율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7.62 | 3.97 | 3.38 | 2.61 | 2.16 | 1.30 | 1.75 | 1.22 | 1.16 | 1.25 | 1.95 |
| 2004 | 8.53 | 4.63 | 3.43 | 2.99 | 2.26 | 1.84 | 1.95 | 1.33 | 1.08 | 1.55 | 2.18 |
| 2005 | 10.36 | 6.28 | 3.93 | 3.91 | 3.44 | 2.02 | 1.82 | 1.45 | 1.14 | 2.19 | 2.67 |
| 2006 | 10.59 | 6.83 | 5.73 | 4.36 | 3.91 | 2.68 | 1.68 | 2.02 | 2.68 | 1.37 | 3.05 |
| 2007 | 11.62 | 7.18 | 6.80 | 4.56 | 3.52 | 2.58 | 3.17 | 1.89 | 1.66 | 1.88 | 3.22 |
| 2008 | 15.92 | 7.43 | 6.26 | 5.25 | 4.38 | 3.37 | 2.50 | 2.62 | 2.24 | 2.23 | 3.72 |
| 비중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계 |
| 2003 | 12.79 | 10.26 | 10.92 | 9.89 | 9.35 | 6.41 | 9.79 | 7.88 | 8.86 | 13.86 | 100 |
| 2004 | 12.47 | 10.58 | 9.69 | 10.01 | 8.69 | 8.09 | 9.74 | 7.66 | 7.43 | 15.63 | 100 |
| 2005 | 11.99 | 11.52 | 9.1 | 10.64 | 10.72 | 7.19 | 7.36 | 6.76 | 6.44 | 18.29 | 100 |
| 2006 | 10.65 | 10.8 | 11.27 | 10.27 | 10.76 | 8.47 | 6.08 | 8.4 | 13.3 | 10.01 | 100 |
| 2007 | 10.54 | 10.53 | 12.8 | 10.21 | 9.1 | 7.66 | 10.78 | 7.45 | 7.8 | 13.12 | 100 |
| 2008 | 12.64 | 9.61 | 10.24 | 10.23 | 9.81 | 8.65 | 7.31 | 8.88 | 9.15 | 13.4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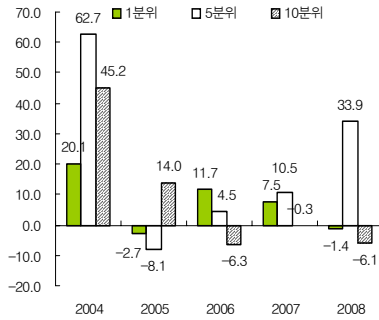
[그림 Ⅲ-12]에서 보듯이 1분위와 5분위에서는 2003~2008년 사이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 수혜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에는 2005년 이후 사적이전소득의 절대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적이전소득의 변화추이가 소득계층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림 Ⅲ-13]에서 주요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소득의 증감률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다.

Ⅲ. 이전소득의 분포 67

[그림 Ⅲ-12] 주요 소득분위별 사적이전 소득의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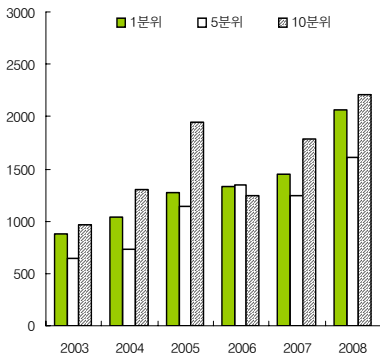


[그림 Ⅲ-13] 주요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소득 증감률(2인 이상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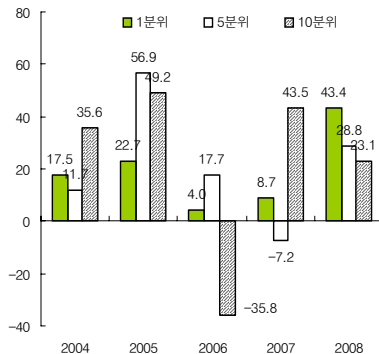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한 증감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Ⅲ-14]에서 보듯이 1분위 5분위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이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0분위에서는 2005~2006년 사이에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소득분위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14] 주요 소득분위별 공적이전 소득의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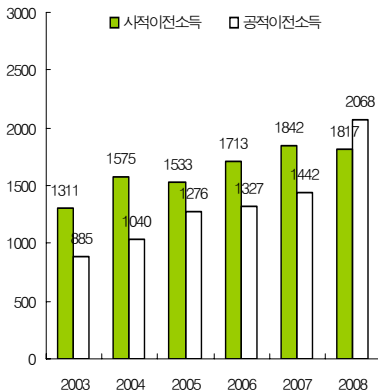
[그림 Ⅲ-15] 주요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2인 이상 가구)
(단위: %)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수준 변화추이를 소득계층별로 분리하여 고찰해보자. 1분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두 가지 이전소득이 모두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07~2008년 사이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소폭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크게 증가하여 양자간의 대소관계가 뒤바뀐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괄목할 만하다. 구성항목에서 본다면 1분위의 경우 공적연금보다는 기타사회보장수혜가 크게 증가한 데 주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구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함께 1분위에서 노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여파와 같은 경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Ⅲ-16] 참조). 5분위와 10분위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의 변화추이가 들쭉날쭉하다.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큰 패턴은 2003~2008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그림 Ⅲ-17]~[그림 Ⅲ-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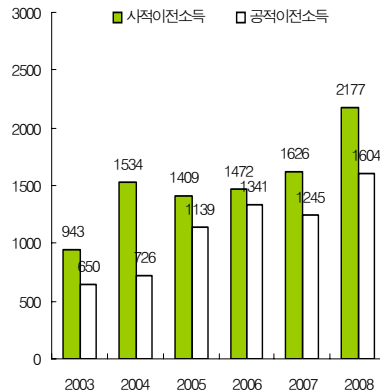
[그림 Ⅲ-16] 소득1분위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교(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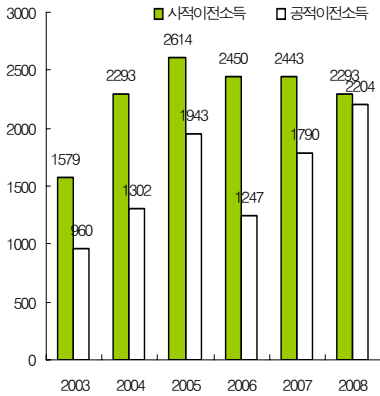
[그림 Ⅲ-17] 소득5분위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교(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그림 III-18] 소득10분위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교(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바. 이전소득의 변화추이: 가구주 연령별 변화추이

사적이전소득은 경제력이 미약한 20대와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 가구당 평균 203만~856만원(2008년 기준)으로 평균치가 가장 크다. 30대 이상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4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전소득 규모가 지역적으로 정점에 이르러 높은 수준을 보이며, 50대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60대 이후의 노령자 가구에서는 다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II-19] 참조).

시계열적으로 볼 때 20대 전반의 경우에는 2003~2006년 동안 사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7~2008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들 연령층에 대한 소득이전 패턴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표본 수가 매우 작은 연령대이므로 소표본 특성(small sample properties)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해 볼 때, 의미가 있는 연령대는 주로 60대 이

상의 노인 연령층이다. 2003년의 경우 약 210만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272만원으로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범위의 일치를 위해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경우만을 고찰하였지만, 노인가구 중 상당수가 단독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노인가구의 사적이전 소득 증가율은 전체적인 이전소득 증가율보다 낮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의 가시적 증가 등에 의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기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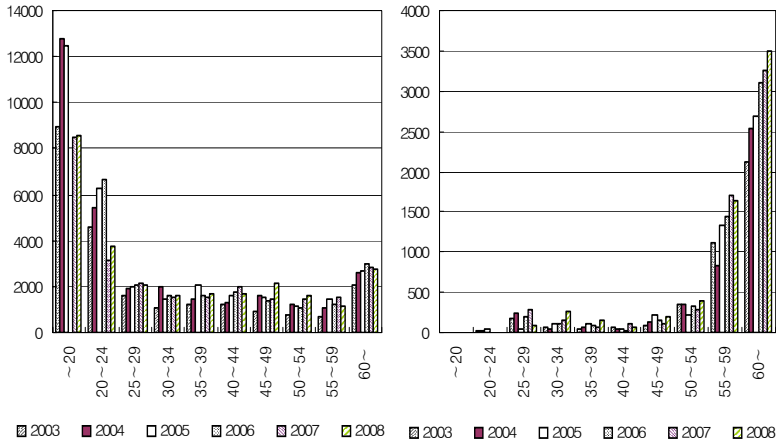
〈표 Ⅲ-11〉 연령별 사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 2003 | 8914 | 4605 | 1569 | 1060 | 1256 | 1246 | 942 | 765 | 665 | 2097 | 1262 |
| 2004 | 12748 | 5401 | 1938 | 1976 | 1438 | 1303 | 1624 | 1246 | 1044 | 2584 | 1680 |
| 2005 | 12484 | 6298 | 1963 | 1483 | 2087 | 1634 | 1498 | 1184 | 1490 | 2658 | 1808 |
| 2006 | 0 | 6671 | 2062 | 1600 | 1600 | 1772 | 1379 | 1053 | 1205 | 2971 | 1783 |
| 2007 | 8472 | 3124 | 2120 | 1492 | 1507 | 2001 | 1457 | 1462 | 1502 | 2837 | 1855 |
| 2008 | 8555 | 3719 | 2030 | 1614 | 1683 | 1684 | 2114 | 1629 | 1184 | 2723 | 1926 |
| 총소득 대비 비율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2003 | 40.68 | 15.81 | 5.13 | 3.16 | 3.43 | 3.22 | 2.36 | 1.95 | 1.75 | 8.23 | 3.55 |
| 2004 | 53.05 | 18.57 | 6.07 | 5.43 | 3.69 | 3.14 | 3.83 | 3.04 | 2.61 | 8.8 | 4.39 |
| 2005 | 35.69 | 22.23 | 5.31 | 3.89 | 5.23 | 3.62 | 3.39 | 2.77 | 3.52 | 9.46 | 4.54 |
| 2006 | 0 | 24.15 | 5.84 | 4.11 | 3.93 | 3.86 | 2.96 | 2.28 | 2.94 | 10.15 | 4.36 |
| 2007 | 44.65 | 12.47 | 5.97 | 3.53 | 3.35 | 4.26 | 3.18 | 3.03 | 3.5 | 9.12 | 4.37 |
| 2008 | 38.21 | 15.15 | 5.78 | 3.42 | 3.68 | 3.49 | 4.4 | 3.22 | 2.61 | 8.74 | 4.38 |

Ⅲ. 이전소득의 분포 71

[그림 Ⅲ-19] 가구주 연령별 사적 [그림 Ⅲ-20] 가구주 연령별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연금의 변화추이(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단위: 만원)



<표 Ⅲ-12> 연령별 공적연금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 2003 | 0 | 16 | 173 | 74 | 36 | 63 | 94 | 355 | 1123 | 2112 | 465 |
| 2004 | 0 | 17 | 231 | 51 | 74 | 40 | 141 | 339 | 820 | 2527 | 518 |
| 2005 | 0 | 45 | 41 | 101 | 99 | 50 | 211 | 226 | 1325 | 2685 | 645 |
| 2006 | 0 | 0 | 196 | 114 | 78 | 28 | 148 | 319 | 1442 | 3097 | 750 |
| 2007 | 0 | 0 | 285 | 155 | 60 | 105 | 115 | 285 | 1714 | 3267 | 846 |
| 2008 | 0 | 0 | 87 | 261 | 145 | 76 | 193 | 394 | 1635 | 3487 | 953 |
| 총소득 대비 비율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2003 | 0 | 0.05 | 0.57 | 0.22 | 0.1 | 0.16 | 0.24 | 0.9 | 2.95 | 8.29 | 1.31 |
| 2004 | 0 | 0.06 | 0.72 | 0.14 | 0.19 | 0.1 | 0.33 | 0.83 | 2.05 | 8.61 | 1.35 |
| 2005 | 0 | 0.16 | 0.11 | 0.27 | 0.25 | 0.11 | 0.48 | 0.53 | 3.13 | 9.56 | 1.62 |
| 2006 | 0 | 0 | 0.56 | 0.29 | 0.19 | 0.06 | 0.32 | 0.69 | 3.52 | 10.58 | 1.83 |
| 2007 | 0 | 0 | 0.8 | 0.37 | 0.13 | 0.22 | 0.25 | 0.59 | 3.99 | 10.5 | 1.99 |
| 2008 | 0 | 0 | 0.25 | 0.55 | 0.32 | 0.16 | 0.4 | 0.78 | 3.6 | 11.19 | 2.17 |

공적연금은 주로 은퇴 후에 수령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령층에서의 수령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 2008년을 예로 들면 20대 전반기까지는 공적연금 수혜가 0원이고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60대 이후의 고령층 가구에서는 가구당 평균 연간 348.7만원에 이른다. 총소득 대비 비중도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져 60세 이상의 경우 11.2%(2008년 기준)에 이른다. 추세적으로 공적연금 수혜의 증가율이 총소득(또는 시장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런 추세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그런 추세가 두드러진다([그림 III-20] 참조).

기타사회보장수혜 역시 2003~2008년 사이에 수혜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소득 대비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와 최근의 경제위기 등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한 부분도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 등으로 대표되는 기타사회보장수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분포한다. 다만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를 합산할 경우(공적이전소득), 가구당 평균수혜는 2003년 69.3만원에서 2008년 163.4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총소득 대비 비중도 1.95%에서 3.72%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에서 총소득 대비 비중이 꾸준히 10%를 상회하여 공적이전소득이 이들 가구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노인연령층에서의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대비 비중은 2003~2008년 사이에 10.1%에서 14.5%에 이를 정도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Ⅲ. 이전소득의 분포 73

〈표 Ⅲ-13〉 연령별 기타사회보장수혜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 2003 | 2613 | 318 | 149 | 103 | 220 | 182 | 213 | 163 | 260 | 451 | 228 |
| 2004 | 1233 | 223 | 327 | 120 | 252 | 279 | 337 | 202 | 374 | 616 | 316 |
| 2005 | 1461 | 74 | 386 | 197 | 293 | 286 | 597 | 333 | 340 | 758 | 418 |
| 2006 | 0 | 121 | 384 | 449 | 370 | 394 | 445 | 285 | 518 | 973 | 496 |
| 2007 | 0 | 272 | 497 | 562 | 402 | 308 | 503 | 417 | 461 | 927 | 521 |
| 2008 | 217 | 656 | 461 | 656 | 710 | 610 | 578 | 479 | 601 | 1025 | 682 |
| 총소득 대비 비율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2003 | 11.92 | 1.09 | 0.49 | 0.31 | 0.6 | 0.47 | 0.53 | 0.41 | 0.68 | 1.77 | 0.64 |
| 2004 | 5.13 | 0.77 | 1.03 | 0.33 | 0.65 | 0.67 | 0.79 | 0.49 | 0.93 | 2.1 | 0.82 |
| 2005 | 4.18 | 0.26 | 1.04 | 0.52 | 0.73 | 0.63 | 1.35 | 0.78 | 0.8 | 2.7 | 1.05 |
| 2006 | 0 | 0.44 | 1.09 | 1.15 | 0.91 | 0.86 | 0.95 | 0.62 | 1.26 | 3.32 | 1.21 |
| 2007 | 0 | 1.08 | 1.4 | 1.33 | 0.89 | 0.66 | 1.1 | 0.86 | 1.07 | 2.98 | 1.23 |
| 2008 | 0.97 | 2.67 | 1.31 | 1.39 | 1.55 | 1.26 | 1.2 | 0.95 | 1.32 | 3.29 | 1.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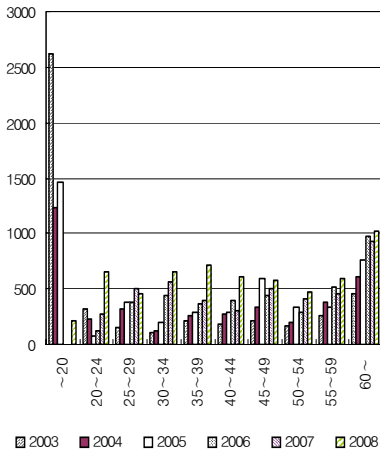
〈표 Ⅲ-14〉 연령별 공적이전소득 분포(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

|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 2003 | 2613 | 334 | 322 | 178 | 256 | 245 | 307 | 518 | 1382 | 2562 | 693 |
| 2004 | 1233 | 240 | 558 | 171 | 326 | 318 | 478 | 541 | 1194 | 3142 | 833 |
| 2005 | 1461 | 119 | 427 | 298 | 391 | 336 | 808 | 559 | 1665 | 3443 | 1063 |
| 2006 | 0 | 121 | 580 | 562 | 447 | 422 | 594 | 604 | 1961 | 4070 | 1246 |
| 2007 | 0 | 272 | 782 | 718 | 462 | 413 | 618 | 703 | 2175 | 4194 | 1367 |
| 2008 | 217 | 656 | 548 | 917 | 854 | 686 | 771 | 873 | 2235 | 4512 | 1634 |
| 총소득 대비 비율 | ~20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 | 평균 |
| 2003 | 11.92 | 1.15 | 1.05 | 0.53 | 0.7 | 0.63 | 0.77 | 1.32 | 3.63 | 10.06 | 1.95 |
| 2004 | 5.13 | 0.82 | 1.75 | 0.47 | 0.84 | 0.77 | 1.13 | 1.32 | 2.98 | 10.7 | 2.18 |
| 2005 | 4.18 | 0.42 | 1.16 | 0.78 | 0.98 | 0.75 | 1.83 | 1.31 | 3.93 | 12.26 | 2.67 |
| 2006 | 0 | 0.44 | 1.64 | 1.45 | 1.1 | 0.92 | 1.27 | 1.31 | 4.78 | 13.9 | 3.05 |
| 2007 | 0 | 1.08 | 2.2 | 1.7 | 1.03 | 0.88 | 1.35 | 1.46 | 5.07 | 13.48 | 3.22 |
| 2008 | 0.97 | 2.67 | 1.56 | 1.94 | 1.87 | 1.42 | 1.61 | 1.72 | 4.93 | 14.48 | 3.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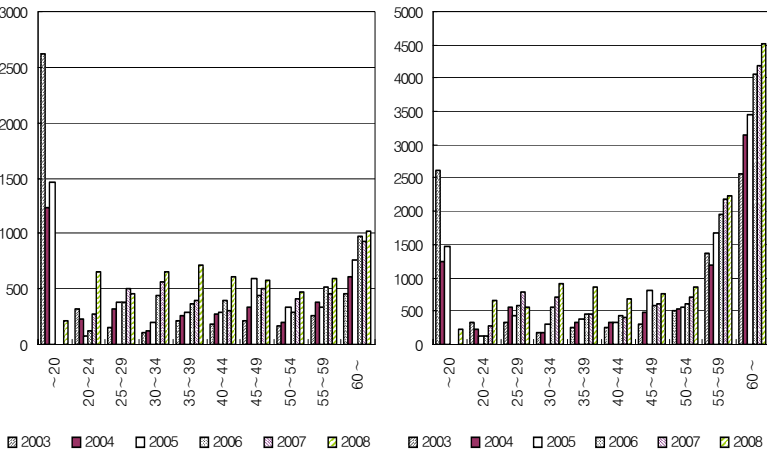
[그림 III-21] 가구주 연령별
기타사회보장수혜의 변화추이
(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그림 III-22] 가구주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변화추이
(2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2.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본절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살펴본다.

가.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한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정패널은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¹⁰⁾. 표본 추출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된 가구는 5,014가구이다.

10)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도서지역과 특수시설 거주자는 조사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재정패널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지역(시도)과 지역 특성(동부(urban area), 읍면부(rural area)), 그리고 주거형태(아파트, 보통)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복지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세금 부담은 고소득층이 많다. 따라서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의 세금 부담 및 복지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계층을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 지역을 과대표집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통계를 활용하여 기초수급 가구의 비율이 15% 이상이 되는 144개 읍면동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주택 평균 면적을 기준으로 하위 50%층에 해당되는 조사구를 과대표출하였다. 과대표출되는 지역은 가중치를 비례적으로 낮춤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패널은 가구 설문과 가구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 설문은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소득이나 소득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재정패널 조사는 2008년 6월~9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설문의 기준 시점은 2007년이다.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07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저장(stock)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나. 민간이전

시장소득은 노동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민간연금소득을 포함한다. 형평화지수를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시장소득의 분포를 보면 1분위의 소득은 약 401.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간계층으로 볼 수 있는 5분위 및 6분위는 각각 2,402.9만원 및 2,946.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는 소득이 약 8,965.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명재·박기백(2008)자

료에 따르면 1분위의 소득은 약 728.7만원, 5분위 및 6분위는 각각 2,840.6만원 및 3,377.4만원, 10분위는 7,911.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이 도시가지조사에 비해 저소득층은 더 낮게, 고소득층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재정패널의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패널에 나타난 연간 가구 총소득은 전체적으로 통계청의 가구 총소득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재정패널의 평균 연간 총소득은 3,442만원(월평균 286만원)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322만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¹¹⁾.

〈표 Ⅲ-15〉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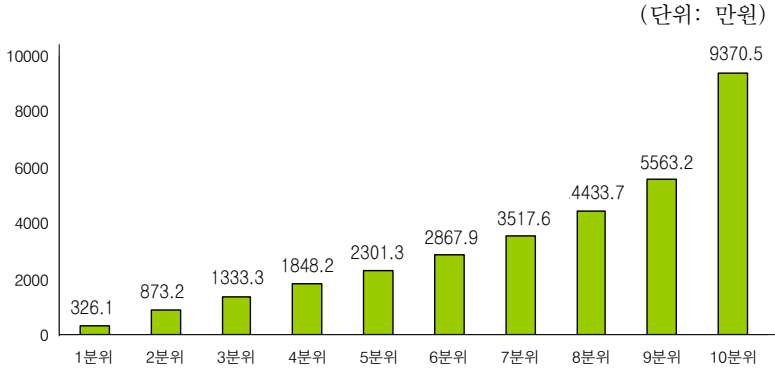
| | 통계청 | | 재정패널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1분위 | 626 | 1.6 | 779 | 2.1 |
| 2분위 | 1,470 | 3.8 | 1,361 | 3.7 |
| 3분위 | 2,074 | 5.4 | 1,833 | 5.0 |
| 4분위 | 2,590 | 6.7 | 2,355 | 6.4 |
| 5분위 | 3,097 | 8.0 | 2,919 | 8.0 |
| 6분위 | 3,625 | 9.4 | 3,521 | 9.6 |
| 7분위 | 4,195 | 10.8 | 4,236 | 11.5 |
| 8분위 | 4,946 | 12.8 | 5,047 | 13.7 |
| 9분위 | 6,103 | 15.8 | 6,375 | 17.4 |

자료: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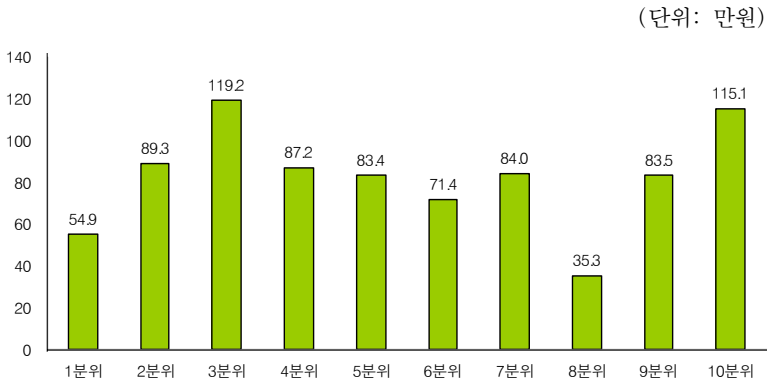
11)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며 재정패널은 패널 조사의 특성상 소득이 과소보고되는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계조사 자료가 소득을 더 낮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Ⅲ. 이전소득의 분포 77

[그림 Ⅲ-23] 소득분위별 시장소득(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그림 Ⅲ-24]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소득(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다음으로 사적이전을 보면 1분위의 사적이전소득은 약 39.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간계층인 5분위 및 6분위는 각각 96.6만원 및 62.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는 사적이전소득이 약 141.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사적이전소득 규모는 약 82.3만원이고, 소득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소득은 고령자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이전소득의 규모는 50세 이상 70세의 경우 연간 약 53만원, 70세 이상은 224만원으로 정부의 현금급여나 사회보험급여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경우 가계살림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족 또는 친지의 지원이 정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명재·박기백(2008)의 사적이전소득 규모 평균은 약 189.6만원이므로, 그에 비하여 재정패널의 사적이전소득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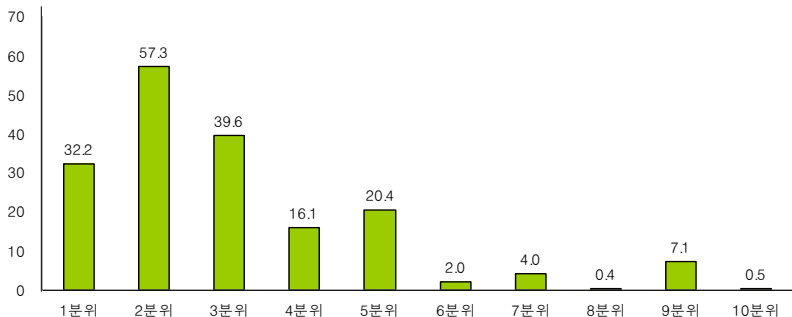
다. 공적이전

먼저 공적연금 이외의 생활보장제도와 기타 현금이전을 포함하여 공적이전 규모를 살펴보자. 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급여액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는 25.1만원, 중간계층인 5분위와 6분위는 각각 16.3만원, 3.7만원으로 나타난다. 최고소득층인 10분위는 0.5만원으로 나타난다.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액을 받으려면 1분위를 초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포함됨으로써 고소득층에도 일부 현금급여 소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급여가 1·2·3분위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평균적인 급여액은 약 18만원인데 이는 성명재·박기백(2008) 자료에서 나타나는 53.7만원에 비해 상당히 작은 수치이다.

[그림 III-25]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연금제외, 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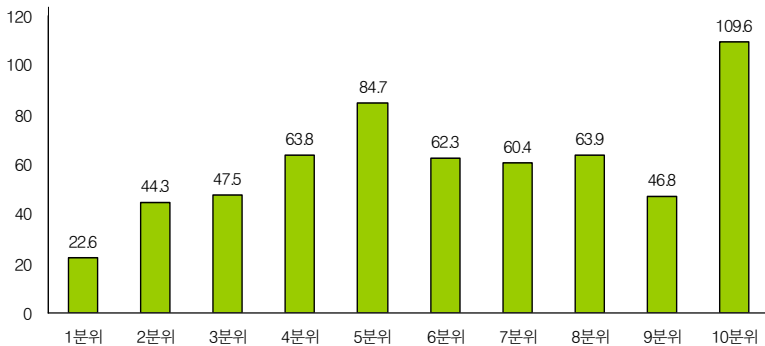


Ⅲ. 이전소득의 분포 79

공적연금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는 25.1만원이고, 5분위와 6분위는 각각 45.3만원, 67.6만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0분위는 118만원으로 평균적인 연금소득의 규모는 약 60.6만원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소득분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0분위의 연금액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명재·박기백(2008)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평균적인 수혜는 약 72.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계층이 적어 전체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소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패널 조사가 진행될수록 공적연금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26] 소득분위별 연금소득 규모(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만원)



라. 상관관계

〈표 Ⅲ-16〉은 재정패널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여타 소득 및 소비지출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시장소득과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과도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할 경우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소비지출에 대해 양(+)¹²⁾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시장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공히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소비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소비성향이 음(-)의 값을 가지지 않는 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여타 소득에 대한 구축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외부효과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치(精緻)한 분석은 다음 장으로 넘기기로 한다¹²⁾.

〈표 Ⅲ-16〉 이전소득의 소득 및 소비지출과의 상관관계
(2007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
| 시장소득 | -0.1194 | -0.2183 |
| 공적이전소득 | -0.0281 | - |
| 사적이전소득 | - | -0.0281 |
| 총소득 | 0.0246 | -0.1900 |
| 소비지출 | 0.2632 | -0.1295 |

12) 물론 이러한 요인이 다른 데 연유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일회성 질문에 의한 정보의 부정확성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구축효과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축효과가 1보다 크다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앞의 제Ⅲ장에서는 서베이자료에 나타난 이전소득 구성항목 각각에 대한 소득계층별 평균분포와 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등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고 두 변수 사이에 현상적·외형적으로만 관찰되는 통계적 관계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타의 환경여건이 적절히 통제되어 있지 않다. 본장에서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적절히 통제한 상태에서의 이전소득 종류간 상관관계 등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1. 이론

가. 기존 연구에서의 모형

가족간 이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Becker(1974)와 Barro(1974) 등이 있다. Becker(1974)는 자식의 소비 또는 효용이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소득을 Y , 소비를 C , 이전지출을 Tr 이라고 하고, 첨자 p 와 c 는 부모와 자식을 나타내는 경우 Becker의 모형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_i = U(C_p, C_c) \text{ s.t. } C_i = Y_i + Tr_i \quad (1)$$

가족간 이전의 경우 $Tr_p = -Tr_c$ 가 된다. 따라서 최적 이전지출의 규모는 소비로 인한 한계효용이 같아지게 만드는 수준이 된다. 만약 정부가 부모에게 조세(T)를 부과한 다음, 자식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

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부모의 경우 예산제약식에서 정부의 세금이 차감되는 반면 자식의 부담은 정부의 지원금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세금만큼 자식에 대한 이전을 감소시키면 부모와 자식 모두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소비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금만큼 이전을 감소시키면 한계효용이 이전과 동일하게 되므로 식 (1)이 최적화된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Barro(1974)의 모형도 가족 구성원의 전체 소득이 공공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Becker(1974)와 같다. Barro(1974)는 중복세대모형(OLGI overlapping generation model)에 세대간 이타주의(altruism)를 포함시키고, 무한대를 살아가는 왕조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세대간 자원배분을 바꾸려는 정부의 정책은 가족간 이전에 의해 무력화된다.

순수한 이타주의가 아닌 모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 Bernheim et al.(1985)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기 위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Cox(1987)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부모가 자식의 복지에 신경을 쓰지만 자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사적이전이 부모와 자식간 보험기능(Rosenzweig, 1988)을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전 자체가 효용을 주는 경우와 사회적 규범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나. 이론 모형

완전구축 모형이 불완전구축 모형의 특수 형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구축 모형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전하는 Cox(1987)의 모형은 부적합하다. 또한 유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거나 그 자체가 효용을 주는 경우가 적절한

모형이라고 본다. 사회적 규범인 경우나 부모에 대한 지원 자체가 효용을 주는 경우는 모형에서는 유사하게 표현된다. 즉, 자식의 효용함수에 부모의 소비 수준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이전하는 금액이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적 규범인 경우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주변의 지탄을 받을 것이므로 부모를 지원하지 않을수록 부(-)의 효용이 발생하는 반면 부모에 대한 지원 자체가 효용을 주는 경우에는 양(+)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소비는 부모의 소득에 자식들이 이전한 금액을 합한 규모가 된다. 따라서 식 (1)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U_j = U(C_j, C_p, Tr_j) \text{ s.t. } C_j = Y_j - Tr_j, C_p = Y_p + \sum_j Tr_j \quad (2)$$

여기서 첨자 j 는 자녀를 나타낸다. 식 (2)에서 부모의 소비는 가족 내에서 공공재 역할을 하며, 개별 자녀의 이전 규모가 효용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본 모형은 Andreoni(1989)가 제시한 warm-glow giving 모형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개별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재 역할을 하는 부모의 소비는 본인의 이전 규모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에 의해서도 제공되므로 모형 내에서 이전지출의 균형 값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조적 게임의 대표적인 경우인 Nash 균형을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개별 자녀는 다른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금액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최적화를 시도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자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부모에 대한 각각의 지원 규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자녀간의 협의가 결국 부모의 소득 규모, 개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므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가 포함되는 실증분석에서는 양자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Nash 균형을 가정하는 경우의 최적화 문제와 1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ax_{Tr_j} U_j &= U(Y_j - Tr_j, Y_p + Tr_j + \sum_{h \neq j} Tr_h, Tr_j) \\ U_{jC_c} &= U_{jC_p} + U_{jTr} \end{aligned} \quad (3)$$

1차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에 대한 이지지출로 인한 자신 소비의 한계효용 감소가 이지지출로 인한 부모 소비의 한계효용 증가 및 이지지출이 주는 한계효용 증가의 합과 같도록 부모에 대한 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모의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지지출로 인한 한계효용 감소와 이지지출이 주는 한계효용 증가의 합과 같도록 결정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축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고령연금 등을 사용하여 부모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정부의 과세방식은 정액세라고 가정하고, 세금은 다시 부모에게 이전해 준다고 가정하자¹³⁾. 다만 세금 대비 이전의 비율(α)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 자녀의 예산제약식은 $C_j = Y_j - T_j - Tr_j$ 로 바뀌고 부모의 예산제약식은 $C_p = Y_p + \sum_j Tr_j + \alpha \sum_j T_j$ 가 된다. 따라서 수요함수는 자신의 가처분소득, 자신의 이지지출을 제외한 부모의 가용소득이 된다.

$$Tr_j = f(Yd_j, Yd_p) \quad (4)$$

여기서 $Yd_j = Y_j - T_j$, $Yd_p = Y_p + Tr_0$, $Tr_0 = \sum_{h \neq j} Tr_h + \alpha T$, $T = \sum_j T_j$ 이다. 세금을 부과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부모가 받는 총이전 규모는 자녀의 이전과 정부 이전의 합, $Ts = \sum_j Tr_j + \alpha T$ 가 된다. 따라서 j 번째 자녀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dYd_j = -dT_j$, $dYd_p = dTr_0 = dTs - dTr_j$ 가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식 (4)를 전미

13) 정률세로 소득의 일정 비율(t)을 사용하여도 된다.

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dTr_j &= -f_{Y_j}dT_j + f_{Y_p}dT_s - f_{Y_p}dTr_j \\ &= [-f_{Y_j}dT_j + f_{Y_p}dT_s]/(1 + f_{Y_p}) \end{aligned} \quad (5)$$

전체 이전 규모에 식 (5)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dTs &= (1 - \gamma_p)^{-1}(\alpha - \gamma_j)dT_j \\ \text{단, } \gamma_p &= \sum f_{Y_p}/(1 + f_{Y_p}), \quad \gamma_j = f_{Y_j}/(1 + f_{Y_p}). \end{aligned} \quad (6)$$

식 (6)은 세금 변화에 따른 부모의 총이전 규모의 변화이다. 따라서 구축효과의 크기는 $1 - (1 - \gamma_p)^{-1}(\alpha - \gamma_j)$ 로 나타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α 가 1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자. 만약 다른 사람이 부모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신의 이전 규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f_{Y_p} = 0$ 이 되어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 전체 이전의 변화는 $1 - \gamma_j$ 이 된다. 즉, 세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부모에 대한 이전 규모가 축소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완전한 이타주의인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이전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의 소득과 타인의 소득간 구별이 없다. 수식으로 보면 $f_{Y_j} = 1 + f_{Y_p}$ 가 된다. 이 경우 $\gamma_j = 1$ 이 되어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 전체 이전의 변화는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축이 발생한다. 다만 α 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구축이 완전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 기존 실증연구

Jensen(2002)은 정부의 이전지출, 특히 고령자 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Jensen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도시로 나간 자식이 농촌에 사는 부모에 대한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누락변수 또는 내생성 등을 줄이기 위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고령자 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1989년과 1992년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구축효과는 0.25에서 0.30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Rosenzweig & Wolpin(1994)은 부모가 여성 자녀에 지급하는 이전 지출을 살펴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의 현물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자녀의 소득이나 정부의 지원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소득의 변화가 자녀의 이전에 주는 효과는 작았다. 그리고 정부 복지제도에 따라 자녀의 이전소득이 1천달러 증가하면 부모의 이전은 3%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부모가 주거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Cox & Jakubson(1995)은 이타적인 동기가 아닌 이전 동기에 의한 가족간 이전에 주목하고 있다. 자료는 President's Commission on Pension Policy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다양한 사적 및 공적이전 자료가 함께 있다. 가구간 이전을 구별하기 위하여 부부간 이전이나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이전은 제외되었다. 자료가 이전지출 또는 이전수입의 대상이 없어서 문제가 되므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Kang & Lee(2003)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하여 구축효과를 검정하였다. 그들은 기존 연구들이 토빗 또는 프로빗 모형 설정을 통해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여 구축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변수의 누락 등에 의한 공적이전지출의 잠재적 내생성 문제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모형 설정의 오류 위험성과 내생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그들은 Honore(1992)의 준모수적 패널고정효과 모형

(semiparametric panel fixed-effect model)을 이용하여 구축효과와 개인이전 동기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들은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KHPS, 1996~1998년 사용)를 이용하여 2개의 패널데이터, 즉 1996/97(3,692가구)와 1997/98(3,674가구)의 두 가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며, 공적이전지출은 사적이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축효과를 가진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강성진·전형준(2005)은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KHPS, 1995~1998년 사용)와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 1999~2003년 사용)를 이용하여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소득분배구조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함에 있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 유무에 주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는 사적이전소득의 종류에는 이타적 또는 교환적 성격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적이전소득이 실현된다고 하고 있다. 토빗모형 추정결과 그는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져 강한 구축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2. 분석모형

가. 구축효과 분석모형

이전지출에 의한 구축효과를 검정함에 있어서는 사적이전지출 공여자 입장에서의 구축효과와, 이전소득 수혜자 입장에서의 구축효과를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이전지출 공여자의 입장에서의 구축효과 결정식을 살펴보자.

1) 공여자 입장에서의 사적이전지출 추정식

식 (4)의 수요함수를 활용하면 적절한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Tr_j = \beta_0 Y_j + \beta_1 Y_p + \beta_2 Tr_{-j} + \beta_3 G_j + \beta X_j + e_j \quad (7)$$

여기서 Tr_j 는 각 가구에서 부모에게 이전하는 규모이다. Y 는 각 가구의 소득(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 제외)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Y_p 는 부모의 소득이다. Tr_{-j} 는 가구원 이외로부터 부모에게 이전되는 규모, G 는 공적이전의 규모로 정부가 부모에게 현금이전하는 연금소득 및 기초생활급여, 경로연금 등을 의미한다. X 는 기타 가구의 특성으로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이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모의 소득, 정부 이전 또는 다른 사람의 부모에 대한 이전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본인의 부모에 대한 이전이 감소하는 것, 다시 말하면 $\beta_1, \beta_2, \beta_3 < 0$ 을 의미한다. 반면 완전구축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의 소득 변화의 영향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이전지출 규모 변화의 영향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beta_1 = \beta_2 = \beta_3$ 라는 것이다. 반면 $\beta_1, \beta_2, \beta_3 = 0$ 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를 비롯한 타 가구의 본인 부모에 대한 이전지출이 본인의 부모에 대한 이전지출 규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소득이 공공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축효과 문제가 없어진다.

식 (7)에 따르면 정확한 구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신(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타인의 이전 규모를 알아야 한다. 서베이 자료에서 정부의 이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분가해 사는 경우의 부모의 소득이나 다른 가족의 소득 또는 부모에 대한 이전 규모를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적이전지출은 非陰數(non-negative)이므로 사적이전 규모 결정식

은 기본적으로 토빗모형의 형태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식 (7)이 음수일 때는 0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Tr_j 는 사적이전지출에 대한 잠재가치 또는 잠재수요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잠재수요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만 실제의 값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Tr_j^* = \max [0, Tr_j]$$

앞의 식 (7)은 암묵적으로 이전소득의 존재가 시장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예상이 소득자의 노동이나 자본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계량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달리 표현한다면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시장소득 수준에 따라 각종 이전소득의 크기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소득자는 예상되는 이전소득을 일종의 주어진 가상소득(virtual income)으로 인식하여, 이를 예산제약조건에 포함시키고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부합하는 최적의 소비 및 노동·자본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엄밀하게 논의를 할 때, 식 (7)에 의한 회귀방정식은 내생성으로 인해 일치추정량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노동·자본의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전소득과 독립적 또는 상관관계가 없이 결정된다고 하면 식 (7)하에서 회귀분석을 하더라도 추정결과의 일치성에는 문제가 없다.

상기의 두 상황은 서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가운데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에 좀 더 큰 무게를 둔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정할 경우 추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뿐만 아니라 이전소득의 구축효과를 분석하는 기존의 대다수 논문이 이러한 문제점을 동일하게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까지 연구된 연구방법론에 의하면 그런 문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강성진·전형준(2005)을 비롯하여 Jensen(2003), Kang & Lee(2003), Altonji 외(1997) 등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도 이전소득을 시장소득에 대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식 (7)의 경우에는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다. 따라서 공여자 입장에서의 구축효과 분석은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추후에 추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함께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자료가 확보된 후에 비로소 공여자 입장에서의 구축효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수혜자 입장에서의 사적이전지출 추정식

수혜자 입장에서 수혜받는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해당 수혜자의 시장소득과 각종 공적이전소득 수혜, 그리고 각종 인적특성을 포함한 수혜자 고유의 특성변수에 영향을 받는다¹⁴⁾.

이러한 취지하에서 수혜자 입장에서의 사적이전소득 수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4) 물론 공여자의 소득이전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지표들도 수혜자의 사적이전소득 규모에 영향을 받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명변수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외변수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가 개입될 수 없다. 다만 사적이전소득의 상당수가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부모·자식 사이에 각종 인적특성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개연성이 큰 만큼, 수혜자의 인적특성을 나타내는 X_p 가 제외변수문제를 일부 해소 또는 감소시켜줄 수 있는 논리적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r_p = b_0 Y_p + b_1 Y_{-p} + b_2 G_p + b X_p + \eta_p \quad (8)$$

여기서 Tr_p 는 수혜자의 사적이전소득 수혜 규모, Y_p 와 Y_{-p} 는 각각 수혜자의 시장소득과 수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여타 가구원의 (총)소득, G_p 는 수혜자가 수혜한 공적이전소득, X_p 는 수혜자의 특성 변수이고, b 와 b_k ($k=0,1,2$)는 계수이다. 상기식에서 Y_{-p} 는 일종의 가상소득(virtual income)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상기식은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만약 가구기준으로 사적이전소득 수혜결정식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Tr = c_0 Y + c_2 G + c X + \eta \quad (9)$$

개인 결정식과의 차이는 개인결정식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항이 가구결정식에는 없다는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분석단위가 개인 단위에서 가구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식 (8)에 포함된 타가구원의 소득이 소득 종류별로 분해되어 가구단위로 분산 및 재합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단위에서의 Y_{-p} 중 사적이전소득 부분은 종속변수 Tr 에 흡수되고, 공적이전소득은 G , 시장소득부분은 Y 에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앞의 1)목에서 인용한 강성진·전형준(2005)의 연구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공여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의 추정식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만 분석자료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개인단위(식 (8)) 또는 가구단위(식 (9))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계수 추정치의 값은 분석단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모형의 설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분석단위 모두에 대해 회귀 분석해보면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의 추정치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분석자료나 추정식의 설정이 달라지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 파악에 실패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상기의 식 (8) 또는 식 (9)를 기준으로 개인기준 또는 가구기준에 입각하여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를 분석한다. 수혜자 입장에서 설정한 추정식의 경우에도 식 (8)에서 수혜자의 사적이전소득과 수혜자의 시장소득 사이에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다. 식 (9)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내생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마땅히 내생성 문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내생성의 잠재적 존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적이전소득과 시장소득 사이의 결정관계에서 전자가 후자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분석방법론상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전소득의 외생성 가능성을 전제로 분석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나. 소비지출 효과 분석모형

가계의 반응(behavioral response)을 고려하여 정부의 이전지출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C_j = \beta_1 Y_j + \beta_2 G_j + \beta X_j + e_j \quad (10)$$

다시 말하면 정부이전을 제외한 가처분소득과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Y 는 각 가구의 소득으로 사적이전

수입 (Tr)을 포함한다¹⁵⁾. G 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의 규모로, 연금소득 및 기초생활급여, 경로연금 등 공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현금이전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은 노동이나 자본으로 대표되는 생산요소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이나 자본의 공급은 소비자 또는 노동(자본)공급자의 효용극대화과 같은 최적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그 과정에서 예산제약조건에 이전소득 규모도 생산요소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전소득의 변화가 다른 종류의 이전소득에 미치는 구축효과 외에도 생산요소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이 부분까지 분석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문제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 분석에 있는 만큼 각종 이전소득의 변화가 시장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의 편의상 잠정적으로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이런 가정하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시장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직접세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식 (10)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공적이전(G)은 편모나 고령 가구주처럼 가계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의 공적이전의 계수는 적절한 추정계수가 될 수 없다. 이밖에 연령처럼 가구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도 있고, 가구주 교육수준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구별 특성을 다 고려하여 추정하기가 어렵다. 패널자료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는 패널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10)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15) 이전수입과 이전지출을 구별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동일한 기호를 사용한다.

을 사용한다.

소비지출에 대한 수식을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rac{\partial C}{\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Tr} \frac{\partial Tr}{\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Y} \quad (11)$$

식 (11)에 따르면 정부의 이전지출로 인한 소비의 변화는 우변의 첫 번째 항에서 나타난 구축효과와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 증대 효과로 구분된다. 또한 가계의 사적이전소득 증가나 공적이전소득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도는 동일하므로 $\frac{\partial C}{\partial Tr} = \frac{\partial C}{\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Y}$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1)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frac{\partial C}{\partial G} = \frac{\partial C}{\partial Y} \left(\frac{\partial Tr}{\partial G} + 1 \right) \quad (11)$$

위의 식은 공적이전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소비지출의 증가효과는 한계소비성향에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를 차감한 후의 잔여분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frac{\partial C}{\partial Y}$)이 0.6이고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가 0.2, 즉 $\frac{\partial Tr}{\partial G} = 0.2$ 라고 하자. 그러면 공적이전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소비지출은 0.48원(=0.6×0.8)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증가된 공적이전소득 1원이 소비지출로 0.48원, 구축효과로 인한 사적이전소득 감소효과로 0.20원, 나머지 0.32원은 저축의 증가로 처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시장소득의 증가나 직접세의 감세를 통한 경우보다는 효과의 절대크기가 작다¹⁶⁾.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를 추정할 때 자연대수선형모형을

16) 그러나 반드시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사용하여 회귀분석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추정계수 값이 $\frac{\partial \ln(Tr)}{\partial \ln(G)}$ 의 의미를 지닌다. $\beta = \frac{\partial \ln(Tr)}{\partial \ln(G)} = \frac{\partial Tr}{\partial G} \cdot \frac{G}{Tr}$ 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구축효과는 $\frac{\partial Tr}{\partial G} = \frac{\partial \ln(Tr)}{\partial \ln(G)} \cdot \frac{Tr}{G} = \beta \cdot \frac{Tr}{G}$ 로 변환하여 추정할 수 있다.

3. 분석자료

가. 자료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구축효과 및 소비지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서베이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하나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정패널' 자료(2007년도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이다.

먼저 재정패널은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¹⁷⁾. 표본 추출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된 가구는 5,014가구이다. 또한 재정패널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지역(시도)과 지역 특성(동부(urban area), 읍면부(rural area)), 그리고 주거형태(아파트, 보통)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복지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세금부담은 고소득층이 많다. 따라서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의 세금 부담 및 복지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계층을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 지역을 과대표집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통계를 활용하여 기초수급 가구의 비율이 15% 이상이 되는 144개 읍면동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주택 평

17) 제주도, 도서지역과 특수시설 거주자는 조사 모집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균 면적을 기준으로 하위 50%층에 해당되는 조사구를 과대 추출하였다. 과대 추출되는 지역은 가중치를 비례적으로 낮춤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패널은 가구 설문과 가구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 설문은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소득이나 소득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재정패널 조사는 2008년 6~9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설문의 기준 시점은 2007년이다.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07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저장(stock)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가계조사자료는 2008년도 자료로 일부의 농·어가를 제외하고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층화무작위추출된 서베이 표본자료이다. 인적특성 및 가구정보와 관련된 조사항목, 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가계조사자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자료인 만큼 자료의 구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의 두 자료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통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서베이자료의 주요 기술통계

재정패널자료(2007년)와 가계조사자료(2008년)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가구원 수는 각각 2.91인으로 거의 일치한다. 가구주의 연령은 각각 50.3세와 50.1세로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 가구당 평균 노인인구 수는 전자가 0.35인, 후자가 0.33인으로 재정패널자료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역시 그 차이가 매우 작다. 연령이 20세 미만인 아동 수는 각각 0.74인과 0.84인으로 가계조사자료가 조금 더 많다. 가구구성 측면에서 볼 때 미성년자녀의 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전반적으로 두 자료는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재정패널자료가 3,678만원인 데 반해 가계조사자료는 3,932만원으로 후자가 약 254만원(재정패널자료 대비 약

6.9%) 정도 더 많다. 양자간에는 1년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가 후자보다 총수준이 낮다고 속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시차를 감안하면 양자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상당히 줄어든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과 자본을 공급한 대가로 수취되는 소득으로 많이 정의되는 시장소득의 가구당 평균치는 재정패널자료와 가계조사자료가 각각 3,506만원과 3,337만원으로 오히려 가계조사자료가 약 170만원 정도 작다. 두 연도 사이의 물가수준 차이 등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좀 더 커질 것이다.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은 가계조사자료가 2,401만원인 데 비해 재정패널자료는 1,739만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무려 662만원에 이른다. 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는 가계부 기록 방식을 통해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빠짐없이 기록되는 반면에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전년도의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여 설문자에게 대강의 값을 제시해준다는 면에서 방법론상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두 자료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도 두 자료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재정패널 자료에 의하면 이전소득(가구 밖에서 가구 내로 이전되어 온 소득) 평균이 161.0만원(공적·사적이전소득이 각각 27.0만원과 134.0만원)으로 가계조사자료의 365.3만원(각각 157.6만원과 207.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패널자료와 가계조사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가구의 인적특성에서는 양자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나 소비지출 관련 통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소득·소비지출에 대한 자료조사방법상의 차이 또는 표본추출방법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 검토에 있는 만큼 기술통계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종료한다.

〈표 IV-1〉 재정패널자료의 주요 기술통계(2007년)

(단위: 명, 만원)

| | 평균 | 최대치 | 최소치 | 표준편차 |
|-------------|------------------------|--------------------------|--------------------------|------------------------|
| 가구원 수 | 2.91 | 8 | 1 | 1.30 |
| 가구주 연령 | 50.28 | 96 | 18 | 20.91 |
| 65세 이상 노인 수 | 0.35 | 3 | 0 | 0.64 |
| 20세 미만 아동 수 | 0.74 | 4 | 0 | 0.94 |
| 총소득 | 3,677.59 (3,451.40) | 34,000.00 (12,000.00) | 600.00 (600.00) | 2,847.75 (2,526.08) |
| 시장소득 | 3,505.97 (3,290.39) | 34,000.00 (12,000.00) | -1,400.00 (-1,812.00) | 2,895.42 (2,587.14) |
| 소비지출 | 1,738.78 | 47,673.20 | 108.00 | 1,478.40 |
| 공적이전소득 | 26.98 | 3,160.00 | 0 | 112.24 |
| 사적이전소득 | 134.03 | 6,000.00 | 0 | 438.39 |

주: 총소득과 시장소득의 경우 () 안의 수치는 가구소득으로 분류한 통계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이며, () 밖의 수치는 개인기준 소득을 합산한 것과 가구소득중 큰 값을 선택한 것임.

〈표 IV-2〉 가계조사자료의 주요 기술통계(2008년)

(단위: 명, 만원)

| | 평균 | 최대치 | 최소치 | 표준편차 |
|-------------|----------|-----------|--------|----------|
| 가구원 수 | 2.91 | 8 | 1 | 1.31 |
| 가구주 연령 | 50.12 | 99 | 16 | 13.89 |
| 65세 이상 노인 수 | 0.33 | 3 | 0 | 0.61 |
| 20세 미만 아동 수 | 0.84 | 5 | 0 | 0.99 |
| 총소득 | 3,932.41 | 30,280.53 | 331.95 | 2,547.45 |
| 시장소득 | 3,337.18 | 30,234.35 | 0.00 | 2,535.95 |
| 소비지출 | 2,401.31 | 13,114.67 | 184.88 | 1,471.52 |
| 공적이전소득 | 157.63 | 12,115.00 | 0.00 | 456.32 |
| 사적이전소득 | 207.64 | 7,706.69 | 0.00 | 561.85 |

V. 구축효과 검정 및 효과분석

1. 구축효과의 검정

가.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개인기준

재정패널자료 1차년도(2007년 대상 2008년 조사) 자료 중 소득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 외부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적이전소득 수령자의 성, 연령, 학령(터미), 해당 개인이 받은 공적이전 소득과 시장소득, 그리고 타 가구원의 소득과 순자산을 회귀변수로 하여 토빗모형하에서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소득과 자산을 만원 단위로 환산하였다. 분석자료는 수준(level) 자체를 기준으로 한 것과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의 두 가지로 하였다. 아래의 <표 V-1>에서는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변수들을 위주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이하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정개인-2의 경우 수혜자의 성에 대한 계수값이 -76.2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성이 높다. 이는 수령자가 남자인 경우라면 여성인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76만 2천원 정도 적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논리를 적용해볼 때 사적이전소득 수령자의 연령이 한 살씩 커질수록 평균 13만 3천원씩 사적이전소득 금액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학력이 중등 또는 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여타의 경우에 비해 220만~662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장소득과 타 가구원 소득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각각 -0.41과 -0.23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노동·자본의

공급을 통해 시장소득을 많이 획득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여타 가구원의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 밖으로부터 수취하는 해당 개인의 사적이전 소득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t 값이 2.5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호도 양(+)으로서 순자산이 커질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계수 추정치가 0.003에 불과하여 경제학적으로는 의미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분석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계수 추정치는 -13.36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구축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타나내는 t 값의 절대값은 1.61에 불과하여 유의수준 10%에서조차 구축효과가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치의 절대치는 13.36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매우 강력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유의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연대수를 취한 상태에서 토빗모형으로 추정한 경우(재정개인 -5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자연대수를 취함에 따라 설명변수 및 종속변의 단위 및 양자간의 비례관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질적으로는 추정결과가 대동소이하다.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층보다는 노인일수록 사적이전소득이 크다. 시장소득과 타 가구원 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값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순자산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1.31, t 값은 -3.19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크므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매우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표 V-1〉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재정패널자료 추정결과)

| | 재정개인-1 (수준) | 재정개인-2 (수준) | 재정개인-3 (자연대수) | 재정개인-4 (자연대수) | 재정개인-5 (자연대수) |
|---------------|-------------------------|-------------------------|-------------------------|-------------------------|-------------------------|
| 상수 | -926.3678 (-5.74)*** | -1194.196 (-7.17)*** | -5.19602 (-4.31)*** | -3.82621 (-3.04)*** | -4.30723 (-3.55)*** |
| 가구주 성 | -26.16359 (-0.52) | -76.15563 (-1.49) | -0.76035 (-1.89)* | -0.60964 (-1.46) | -0.67920 (-1.69)* |
| 가구주 연령 | 9.75553 (4.78)*** | 13.30615 (6.46)*** | 0.12337 (8.08)*** | 0.10774 (6.81) | 0.11377 (7.48)*** |
| 학력더미(중등) | | 220.50080 (3.01)*** | | 1.18443 (2.05)*** | 1.36402 (2.60)*** |
| 학력더미(고등) | | | | -1.94162 (-3.54)*** | -1.68724 (-3.72)*** |
| 학력더미(대학) | | 403.87690 (4.88)*** | | -0.57059 (-0.95) | |
| 학력더미 (대학원) | | 662.29700 (4.21)*** | | 0.49423 (0.44) | |
| 공적이전소득 | -14.29933 (1.63) | -13.35887 (-1.61) | -1.28307 (-3.12)*** | -1.33792 (-3.30)*** | -1.30515 (-3.19)*** |
| 시장소득 | -0.40546 (-8.33)*** | -0.41379 (-8.62)*** | -1.10158 (15.70)*** | -1.06743 (-15.34)*** | -1.07181 (-15.74)*** |
| 타가구원 소득 | -0.21620 (-8.28)*** | -0.22584 (-8.48)*** | -0.89673 (-18.07)*** | -0.87998 (-17.56)*** | -0.88358 (-17.87)*** |
| 순자산 | 0.00373 (3.19)*** | 0.00300 (2.52)** | 0.05831 (1.31) | | |
| 표본수 | 7,006 | 7,006 | 7,006 | 7,006 | 7,006 |

주: 1. () 안은 t-값임.

2. 각종 소득 및 식료품비 지출은 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함.

3. 가구주 성은 남성 1, 여성 0임.

4.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구기준

재정패널자료의 가구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외부로부터 수취

한 사적이전소득을 종속변수로 삼고, 가구주의 성과 연령, 연령제곱, 학력더미, 가구규모 또는 노인가구원 수, 공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순자산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먼저 수준(level)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자. <표 V-2>에서는 모두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적이전소득 수준이 증가하되 증가율은 체감(연령제곱 계수가 음수이므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원 수나 노인가구원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노인가구원 수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면 연령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선성의 가능성으로 인해 연령관련 변수만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추정결과는 개인기준의 경우와 대동소이다. 재정가구-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계수는 -1.46, t값은 -5.08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존재하며,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수가 -1.46이라는 의미는 공적이전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사적이전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1만 5천원씩 감소함을 의미한다.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를 보면 계수 추정치의 분포가 다른 추정결과와 비교해볼 때 대체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계수 추정치가 대폭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재정가구-10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0.12로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값은 -1.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구축효과가 거의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만약 통계적 유의성을 따지지 않고 추정치 값이 -0.12라고 한다면 다음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적이전소득이 1% 증가한다면 사적이전소득이 0.12%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III-7>과 <표 III-10>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가구당 평균 사적·공적이전소득이 각각 192.6만원과

163.4만원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의 추정치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재정 가구-11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1만원 증가하면 사적이전소득은 평균적으로 1,414원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2〉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재정패널자료 추정결과)

| 수준 | 재정가구-1 | 재정가구-2 | 재정가구-3 | 재정가구-4 | 재정가구-5 |
|-------------|-------------------------|-------------------------|-------------------------|--------------------------|--------------------------|
| 상수 | -692.9109 (-4.52)*** | -280.5417 (-1.84)* | -134.1465 (-0.85) | -645.3953 (-4.21)*** | -664.3288 (-4.43)*** |
| 가구주 성 | -276.1085 (-4.02)*** | -361.7548 (-5.02)*** | -326.4883 (-4.41)*** | -265.1391 (-3.85)*** | -268.9586 (-3.97)*** |
| 가구주 연령 | 12.7453 (6.03)*** | 1.72868 (0.73) | 0.60954 (0.26) | 12.83233 (5.97)*** | 12.98482 (6.27)*** |
| 가구주 연령2 | -0.0062 (-5.96)*** | -0.00088 (-0.75) | -0.00051 (-0.44) | -0.00633 (-5.93)*** | -0.00640 (-6.23)*** |
| 학력더미(중등) | | | | -37.74061 (-0.60) | |
| 학력더미(고등) | | | | -262.79630 (-4.52)*** | -245.97510 (-4.74)*** |
| 학력더미(대학) | | | | 119.13390 (2.04)*** | 139.75350 (4.47)*** |
| 학력더미(대학원) | | | | 96.76574 (0.68) | |
| 가구원 수 | | | -65.18113 (-2.37)** | | |
| 65세 이상 노인 수 | | 358.1360 (7.85)*** | 370.4914 (7.99)*** | | |
| 공적이전소득 | -1.45433 (-5.26)*** | -1.50912 (-5.18)*** | -1.45203 (-4.96)*** | -1.46099 (-5.07)*** | -1.45651 (-5.08)*** |
| 시장소득 | -0.30793 (-9.58)*** | -0.28259 (-8.97)*** | -0.26995 (-8.39)*** | -0.30571 (-9.74)*** | -0.30592 (-9.76)*** |
| 순자산 | 0.00452 (4.21)*** | | 0.00429 (3.97)*** | 0.00393 (3.78)*** | 0.00392 (3.75)*** |
| 표본수 | 4,927 | 4,927 | 4,927 | 4,917 | 4,917 |

주: 1. () 안은 t-값임.

2. 각종 소득 및 식료품비 지출은 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함.

3. 가구주 성은 남성 1, 여성 0임.

4.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V-3〉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재정패널자료 추정결과)

| 자연대수 | 재정가구-6 | 재정가구-7 | 재정가구-8 | 재정가구-9 | 재정가구-10 |
|-------------|--------------------------|-------------------------|-------------------------|-------------------------|--------------------------|
| 상수 | 4.5126 (4.80)*** | 6.26668 (6.42)*** | 6.94839 (7.21)*** | 6.98678 (7.05)*** | 0.83437 (0.83) |
| 가구주 성 | -2.5589 (-7.12)*** | -1.75329 (-4.61)*** | -1.70322 (-4.48)*** | -1.369889 (-4.44)*** | -1.77590 (-4.71)*** |
| 가구주 연령 | 0.04482 (2.95)*** | 0.02661 (1.78) | 0.01638 (1.07) | 0.01630 (1.06) | 0.13258 (9.69)*** |
| 가구주 연령2 | -0.0000232 (-3.14)*** | -0.0000146 (-2.00)** | -0.00001 (-1.32) | -0.00001 (-1.31) | -0.0000648 (-9.68)*** |
| 학력더미(중등) | | | 0.67087 (1.71)* | 0.66652 (1.69)* | |
| 학력더미(고등) | | | -1.39896 (-4.26)*** | -1.40088 (-4.27)*** | -1.01861 (-2.74)*** |
| 학력더미(대학) | | | -0.16932 (-0.58) | -0.16448 (-0.57) | |
| 학력더미(대학원) | | | 0.88472 (1.26) | 0.88331 (1.26) | |
| 가구원 수 | | -0.95536 (-6.38)*** | -0.90536 (-6.11)*** | | |
| 65세 이상 노인 수 | 3.42135 (12.10)*** | 3.55797 (12.37)*** | 3.53171 (12.29)*** | | |
| 공적이전소득 | -0.54715 (-4.98)*** | -0.52349 (-4.66)*** | -0.51988 (-4.63)*** | -0.52117 (-4.63)*** | -0.11992 (-1.15) |
| 시장소득 | -1.65624 (-27.51)*** | -1.50057 (-26.18)*** | -1.48902 (-26.53)*** | -1.48721 (-26.42)*** | -1.68517 (-26.63)*** |
| 순자산 | | -0.00677 (-0.17) | | -0.00814 (-0.21) | 0.03017 (0.75) |
| 표본수 | 4,927 | 4,927 | 4,927 | 4,927 | 4,917 |

주: 1. () 안은 t-값임.

2. 각종 소득 및 식료품비 지출은 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함.

3. 가구주 성은 남성 1, 여성 0임.

4.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다.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가구기준

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회귀분석해본 결과,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수준(level)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다.

〈표 V-4〉 회귀분석결과(Tobit모형: 가계조사자료 추정결과)

| | 가계-1 | 가계-2 | 가계-3 |
|-------------|-------------------------|-------------------------|-------------------------|
| 상수 | 1152.113 (8.98)*** | 925.4628 (7.18)*** | 585.4518 (3.89)*** |
| 가구주 성 | -349.1046 (-9.38)*** | -329.9029 (-9.01)*** | -360.0814 (-8.93)*** |
| 가구주 연령 | -36.1503 (-6.95)*** | -22.8688 (-4.14)** | -15.2789 (-2.52)** |
| 가구주 연령2 | 0.3494 (7.10)*** | 0.2121 (3.87)*** | 0.1684 (2.89)*** |
| 학력더미(중등) | | | 76.0550 (1.86)* |
| 학력더미(고등) | | | 105.6408 (2.46)** |
| 학력더미(대학) | | | 237.6485 (4.05)*** |
| 학력더미(대학원) | | | 314.4172 (3.49)*** |
| 가구원 수 | | -92.7080 (-5.01)*** | -76.0029 (-4.05)*** |
| 20세 미만 아동 수 | | 128.5445 (5.43)*** | 113.7849 (4.76)*** |
| 65세 이상 노인 수 | | 110.3762 (4.31)*** | 99.6134 (3.90)*** |
| 공적이전소득 | -0.1054 (-3.79)*** | -0.1064 (-2.79)*** | -0.1299 (-4.44)*** |
| 시장소득 | -0.1414 (-10.58)*** | -0.1351 (-10.29)*** | -0.1464 (-10.17)*** |
| 식료품 지출 | 0.6487 (8.23)*** | 0.6854 (8.58)*** | 0.6594 (8.56)*** |
| 표본수 | 5,158 | 5,158 | 5,158 |

주: 1. () 안은 t-값임.

2. 각종 소득 및 식료품비 지출은 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함.

3. 가구주 성(性)에 대한 더미변수의 값은 남성 1, 여성 0로 설정함.

4. *, **, *** 표시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재정패널자료와 가계조사자료는 담고 있는 자료의 정보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산정보 또한 개인정보 등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가구규모와 노인 수, 공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식료품 지출 등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계-3에 의하면, 사적이전소득은 시장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각각의 계수는 -0.15와 -0.13으로 비슷하다. 이는 노동이나 자본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수취하거나 공공부문으로부터 각종 연금이나 기타 수혜를 받을 때 해당 소득의 13~15% 정도에 해당되는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구축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다만 구축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재정패널자료와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적이전소득 규모는 공적이전소득의 크기에 따라 가변적이다. 즉,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강성진·전형준(2005)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파급효과 분석: 희생된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효과를 중심으로

강성진·전형준(2005)의 연구에서는 구축효과의 존재 여부 검증에만 분석이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구축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lambda = \frac{\partial Tr}{\partial G}$ 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한다. 논의의 편의상 한계구축효과와 평균구축효과가 λ 로 동일하다고 하자. 그러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희생된 사적이전소득 크기는 $\Delta Tr = \lambda \cdot \Delta G$ 라고 할 수 있다. 제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축으로 인해 희생된 소비지출은 ΔTr 에 소비성향을 곱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별로 공적이전소득과 소비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희생된 소비지출을 가구별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여기

서 소득성향은 소득 대비 소비 규모, 즉 평균소비성향을 한계소비성향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가.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본항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모의실험을 통해 구축효과가 없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사적이전소득과 총소득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지출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구축효과가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본다.

구축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 수준변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던 회귀식 중 재정가구-5와 자연대수회귀식 중 재정가구-10에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수준변수 회귀결과에서 계수 추정치는 -1.45이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1원 증가할 때마다 사적이전소득이 1.45원씩 비례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가구당 평균 공적이전소득이 27.06만원이므로 그에 따라 희생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39.41만원(=27.06만원×1.45)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173.83만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총소득도 3.717만원으로 39.41만원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소득 증가분 39.41만원은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각각 18.63만원과 20.78만원씩 처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구축효과가 없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적이전소득 증가분이 소비성향을 따라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증가로 처분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모의실험 결과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가장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 소득계층은 1~3분위로 가구당 평균 63.7만~117.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5〉 구축효과(재정가구-5 기준)

(단위: 만원)

| 수준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지니 | |
|----------------------|------|---------|---------|---------|---------|---------|---------|---------|---------|---------|---------|---------|---------|
| 구축 효과 있는 경우 | 시장소득 | 810.73 | 669.93 | 1624.05 | 1839.48 | 3069.20 | 3535.94 | 3574.55 | 4664.97 | 5919.82 | 9543.29 | 3516.11 | 0.40325 |
| | 사적이전 | 84.66 | 221.99 | 141.47 | 146.56 | 115.38 | 99.67 | 102.50 | 95.68 | 160.56 | 176.41 | 134.42 | |
| | 민간소득 | 895.39 | 891.92 | 1765.52 | 1986.04 | 3184.58 | 3635.61 | 3677.05 | 4760.65 | 6080.38 | 9719.69 | 3650.53 | 0.39321 |
| | 공적이전 | 80.66 | 84.48 | 43.73 | 13.16 | 5.37 | 14.71 | 7.77 | 6.36 | 9.59 | 4.54 | 27.06 | |
| | 총소득 | 976.05 | 976.40 | 1809.25 | 1999.20 | 3189.95 | 3650.32 | 3684.82 | 4767.01 | 6089.97 | 9724.24 | 3677.59 | 0.38675 |
| | 소비지출 | 848.82 | 948.69 | 1152.02 | 1421.79 | 1590.57 | 1811.06 | 1931.58 | 2094.09 | 2431.81 | 3164.65 | 1738.78 | |
| | 저축 | 127.23 | 27.71 | 657.23 | 577.41 | 1599.38 | 1839.26 | 1753.24 | 2672.92 | 3658.16 | 6559.59 | 1938.81 | |
| 희생된 | 사적이전 | 117.49 | 123.04 | 63.70 | 19.17 | 7.83 | 21.43 | 11.32 | 9.26 | 8.54 | 6.62 | 38.86 | |
| 구축 효과 없을 경우 | 시장소득 | 810.73 | 669.93 | 1624.05 | 1839.48 | 3069.20 | 3535.94 | 3574.55 | 4664.97 | 5919.82 | 9543.29 | 3516.11 | 0.40325 |
| | 사적이전 | 202.15 | 345.03 | 205.17 | 165.74 | 123.20 | 121.09 | 113.82 | 104.94 | 169.27 | 183.03 | 173.29 | |
| | 민간소득 | 1012.88 | 1014.96 | 1829.22 | 2005.22 | 3192.4 | 3657.03 | 3688.37 | 4769.91 | 6089.73 | 9726.31 | 3689.18 | 0.38393 |
| | 공적이전 | 80.66 | 84.48 | 43.73 | 13.16 | 5.37 | 14.71 | 7.77 | 6.36 | 9.59 | 4.54 | 27.06 | |
| | 총소득 | 1093.54 | 1099.44 | 1872.94 | 2018.38 | 3197.77 | 3671.75 | 3696.14 | 4776.27 | 6099.32 | 9730.85 | 3716.24 | 0.37835 |
| | 소비지출 | 931.79 | 1050.83 | 1190.17 | 1432.93 | 1594.78 | 1821.74 | 1937.05 | 2098.43 | 2435.67 | 3166.66 | 1764.07 | |
| | 저축 | 161.75 | 48.61 | 682.77 | 585.45 | 1602.99 | 1850.01 | 1759.09 | 2677.84 | 3663.65 | 6564.19 | 1952.17 | |
| 변 화 량 | 사적이전 | 117.49 | 123.04 | 63.70 | 19.17 | 7.83 | 21.43 | 11.32 | 9.26 | 8.54 | 6.62 | 38.86 | |
| | 총소득 | 117.49 | 123.04 | 63.70 | 19.17 | 7.83 | 21.43 | 11.32 | 9.26 | 8.54 | 6.62 | 38.86 | |
| | 소비지출 | 82.97 | 102.13 | 38.15 | 11.14 | 4.21 | 10.68 | 5.47 | 4.33 | 3.43 | 2.01 | 26.47 | |
| | 저축 | 34.52 | 20.91 | 25.55 | 8.03 | 3.62 | 10.75 | 5.85 | 4.93 | 5.11 | 4.61 | 12.39 | |

주: 1. 재정가구-5 기준 (계수: -1.456512)

2. 민간소득(=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현재 0.39321에서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0.38393으로 소폭 낮았을 것으로 추정됨.

자연대수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축효과에 의한 파급효과는 수준모형의 경우와 다소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연대수회귀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구축을 통해 희생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16.12만원으로 수준모형에 비해 절반보다 조금 작다. 16.12만원은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각각 7.62만원과 8.50만원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희생된 사적이전소득이 그 분위에서 가구당 평균 20.62만원으로 가장 크고 10분위와 9분위가 각각 21.15만원과 19.25만원으로 높고 4분위, 3분위의 순서로 작아진다. 이

는 자연대수모형 설정에 따라 구축효과가 공적이전소득의 크기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크기에도 의존하여 변하기 때문이다.

만약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희생되지 않고 잔존하였을 사적이전소득이 대부분 소비지출에 충당되었을 것인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저축의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6〉 구축효과(재정가구-10 기준)

(단위: 만원)

| 수준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지니 | |
|----------------------|-------|--------|---------|---------|---------|---------|---------|---------|---------|---------|---------|---------|---------|
| 구축 효과 있는 경우 | 시장소득 | 810.73 | 669.93 | 1624.05 | 1839.48 | 3069.20 | 3535.94 | 3574.55 | 4664.97 | 5919.82 | 9543.29 | 3516.11 | 0.40325 |
| | 사적이전 | 84.66 | 221.99 | 141.47 | 146.56 | 115.38 | 99.67 | 102.50 | 95.68 | 160.56 | 176.41 | 134.42 | |
| | 민간소득 | 895.39 | 891.92 | 1765.52 | 1986.04 | 3184.58 | 3635.61 | 3677.05 | 4760.65 | 6080.38 | 9719.69 | 3650.53 | 0.39321 |
| | 공적이전 | 80.66 | 84.48 | 43.73 | 13.16 | 5.37 | 14.71 | 7.77 | 6.36 | 9.59 | 4.54 | 27.06 | |
| | 총소득 | 976.05 | 976.40 | 1809.25 | 1999.20 | 3189.95 | 3650.32 | 3684.82 | 4767.01 | 6089.97 | 9724.24 | 3677.59 | 0.38675 |
| | 소비지출 | 848.82 | 948.69 | 1152.02 | 1421.79 | 1590.57 | 1811.06 | 1931.58 | 2094.09 | 2431.81 | 3164.65 | 1738.78 | |
| | 저축 | 127.23 | 27.71 | 657.23 | 577.41 | 1599.38 | 1839.26 | 1753.24 | 2672.92 | 3658.16 | 6559.59 | 1938.81 | |
| 희생된 사적이전 | 10.15 | 26.62 | 16.97 | 17.58 | 13.84 | 11.95 | 12.29 | 11.47 | 19.25 | 21.15 | 16.12 | | |
| 구축 효과 없을 경우 | 시장소득 | 810.73 | 669.93 | 1624.05 | 1839.48 | 3069.20 | 3535.94 | 3574.55 | 4664.97 | 5919.82 | 9543.29 | 3516.11 | 0.40325 |
| | 사적이전 | 94.81 | 248.61 | 158.44 | 164.14 | 129.21 | 111.62 | 114.79 | 107.16 | 179.82 | 197.56 | 150.54 | |
| | 민간소득 | 905.54 | 918.54 | 1782.48 | 2003.62 | 3198.41 | 3647.56 | 3689.34 | 4772.13 | 6099.63 | 9740.85 | 3666.65 | 0.39170 |
| | 공적이전 | 80.66 | 84.48 | 43.73 | 13.16 | 5.37 | 14.71 | 7.77 | 6.36 | 9.59 | 4.54 | 27.06 | |
| | 총소득 | 986.20 | 1003.02 | 1826.21 | 2016.78 | 3203.78 | 3662.27 | 3697.11 | 4778.49 | 6109.22 | 9745.39 | 3693.71 | 0.38532 |
| | 소비지출 | 857.22 | 971.94 | 1162.35 | 1433.74 | 1598.30 | 1816.41 | 1939.17 | 2102.23 | 2442.11 | 3176.19 | 1748.09 | |
| | 저축 | 128.98 | 31.08 | 663.86 | 583.04 | 1605.48 | 1845.86 | 1757.94 | 2676.26 | 3667.11 | 6569.20 | 1945.62 | |
| 변 화 량 | 사적이전 | 10.15 | 26.62 | 16.97 | 17.58 | 13.84 | 11.95 | 12.29 | 11.47 | 19.25 | 21.15 | 16.12 | |
| | 총소득 | 10.15 | 26.62 | 16.97 | 17.58 | 13.84 | 11.95 | 12.29 | 11.47 | 19.25 | 21.15 | 16.12 | |
| | 소비지출 | 8.40 | 23.24 | 10.33 | 11.95 | 7.73 | 5.35 | 7.59 | 8.14 | 10.30 | 11.54 | 10.45 | |
| | 저축 | 1.75 | 3.38 | 6.64 | 5.63 | 6.11 | 6.60 | 4.70 | 3.33 | 8.95 | 9.61 | 5.67 | |

주: 1. 재정가구-10 기준 (계수: -0.1199176)

2. 민간소득(=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현재 0.39321에서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0.38393으로 소폭 낮았을 것으로 추정됨.

나. 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는 가구당 평균 20.5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소득계층별로는 1~2분위와 10분위가 양쪽 끝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한편 중소득층으로 갈수록 구축으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희생 정도는 작아지면서 U자형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7〉 구축효과(가계-3 기준)

(단위: 만원)

| 수준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평균 | 지니 | |
|----------------------|------|-------|--------|--------|--------|--------|--------|--------|--------|--------|--------|--------|---------|
| 구축 효과 있는 경우 | 시장소득 | | 1097.6 | 1726.9 | 2302.2 | 2842.5 | 3367.9 | 4040.9 | 4829.6 | 5936.8 | 8995 | 3567.1 | 0.37400 |
| | 사적이전 | 184.8 | 246.4 | 235 | 185.4 | 188.8 | 230.2 | 182.8 | 211.9 | 164.4 | 246.8 | 207.6 | 0.35339 |
| | 공적이전 | 164.4 | 168.8 | 136.8 | 161.7 | 160.6 | 149 | 147.6 | 112.1 | 176.2 | 198.9 | 157.6 | 0.34978 |
| | 총소득 | 882.8 | 1512.8 | 2098.7 | 2649.2 | 3192 | 3747.1 | 4371.3 | 5153.5 | 6277.4 | 9440.7 | 3932.4 | 0.33971 |
| | 소비지출 | 606.7 | 1041.7 | 1459.9 | 1821.1 | 2162.5 | 2393.5 | 2783.5 | 3178.1 | 3698.1 | 4868.4 | 2401.3 | |
| | 저축 | 276.1 | 471.1 | 638.9 | 828.1 | 1029.5 | 1353.5 | 1587.8 | 1975.4 | 2579.3 | 4572.3 | 1531.1 | |
| 희생된 사적이전 | 21.4 | 21.9 | 17.8 | 21 | 20.9 | 19.4 | 19.2 | 14.6 | 22.9 | 25.8 | 20.5 | | |
| 구축 효과 없을 경우 | 시장소득 | 533.6 | 1097.6 | 1726.9 | 2302.2 | 2842.5 | 3367.9 | 4040.9 | 4829.6 | 5936.8 | 8995 | 3567.1 | 0.37400 |
| | 사적이전 | 206.2 | 268.3 | 252.8 | 206.4 | 209.7 | 249.6 | 202 | 226.5 | 187.3 | 272.6 | 228.1 | 0.35155 |
| | 공적이전 | 164.4 | 168.8 | 136.8 | 161.7 | 160.6 | 149 | 147.6 | 112.1 | 176.2 | 198.9 | 157.6 | 0.34800 |
| | 총소득 | 904.2 | 1534.8 | 2116.5 | 2670.2 | 3212.9 | 3766.4 | 4390.5 | 5168.1 | 6300.3 | 9466.5 | 3952.9 | 0.33801 |
| | 소비지출 | 620.1 | 1055.5 | 1471.4 | 1834.3 | 2176.2 | 2405.6 | 2794.6 | 3187.1 | 3709.5 | 4880.4 | 2413.4 | |
| | 저축 | 284.1 | 479.3 | 645.1 | 835.9 | 1036.6 | 1360.8 | 1595.8 | 1981 | 2590.8 | 4586.1 | 1539.5 | |
| 변 화 량 | 사적이전 | 21.4 | 21.9 | 17.8 | 21 | 20.9 | 19.4 | 19.2 | 14.6 | 22.9 | 25.8 | 20.5 | |
| | 총소득 | 21.4 | 21.9 | 17.8 | 21 | 20.9 | 19.4 | 19.2 | 14.6 | 22.9 | 25.8 | 20.5 | |
| | 소비지출 | 13.3 | 13.7 | 11.5 | 13.2 | 13.7 | 12.1 | 11.2 | 8.9 | 11.3 | 12 | 12.1 | |
| | 저축 | 8.0 | 8.2 | 6.2 | 7.8 | 7.1 | 7.3 | 8.0 | 5.6 | 11.5 | 13.8 | 8.4 | |

주: 가계-3 기준 (계수: -0.12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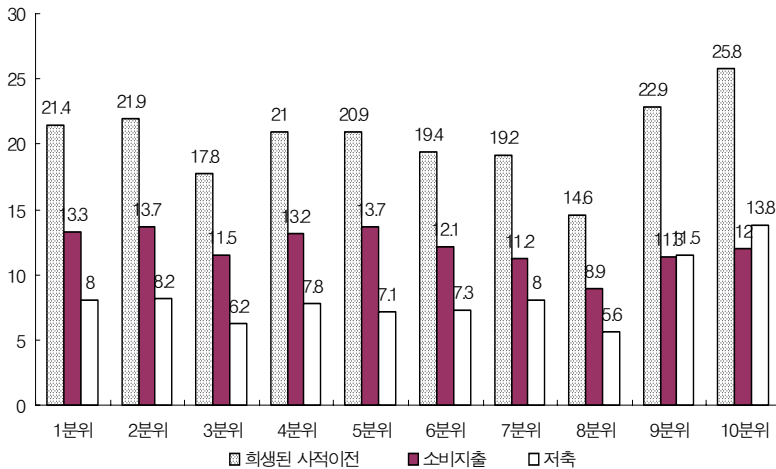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총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비지출, 저축이 각각 가구당 평균 20.5만원, 20.5만원, 12.1만원, 8.4만원씩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체로 소비성향이 약 0.6 정도이므로 구축효과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증가된 소득은 대략 6:4의 비율로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배분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총소득 지니계수는 0.33971에서 0.33801로 약 0.00170지니_p만큼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이는 사적이전소득이 친지간의 생계비 보조의 성격을 많이 띠는 만큼 구축효과가 없었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구축효과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그림 V-1] 소득분위별 구축효과 분포(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만원)



18) 이는 시장소득 대비 0.45%, 총소득 대비 0.50%의 지니계수의 추가하락을 의미한다.

3. 정책시사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경우와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 있어 분석 결과, 특히 그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계수 추정치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재정가구-10에서는 구축효과를 의미하는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1을 상회하는 반면,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가계-3에서는 구축효과가 0.13 정도에 불과하여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가능성이다. 둘째, 분석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가능성이다. 첫째 경우와 관련하여 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는 가계부 방식으로 수시로 조사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일회성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정패널자료는 다분히 오래된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가 생성되는 만큼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회귀방정식에서 내생성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도 있다. 즉,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구축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모형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회귀식에서는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중공선성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사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내생성을 가지는 경우일 수도 있다. 아쉽게도 이런 것중 어느 하나도 주어진 정보하에서 도구변수 등을 사용하여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몇 가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숙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아래에서는 가계조사자료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자료 수집·축적 과정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패널자료보다 가계조사자료의 정보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연후에 다시 평가해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 특히 가계-3에 의하면 구축효과 $\frac{\partial Tr}{\partial G}$ 은 0.13(가계-3 기준)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구축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소득재분배정책 효과 중 일부가 누수됨을 의미한다. 이는 구축효과만큼 공공이전을 통한 정책효과가 일부 상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이전소득만을 대상으로 공공이전을 통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면 구축효과만큼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구축효과란 사전이전소득을 감축하는 만큼 이는 생계비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친지 등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지출하는 사적이전소득을 위한 부담을 포함한 총부담은 구축효과만큼 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공공지출 증대를 위해 그만큼 세금부담을 늘린다면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은 공공지출 확대분에서 구축효과만큼을 차감한 부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금융 및 경제위기 이후 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의한 정부지출(소득이전)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가계-3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지출 증가를 위해 증가된 국민부담 증가분 중 약 13%는 사적부담 감소로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향후에도 구축효과가 종전대로 유지된다면,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증대시켜 재분배 정책의 재원을 확보할 때 그 중 일부(13%)는 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부담까지 고려하면 공공이전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일부는 구축되기 때문에 총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증세를 통해 증가된 세부담을 부담하는 주체와 구축을 통해 사적부담이 경감된 주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축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축효과의 존재는 정책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지 목표치 달성이 구축효과만큼 부족해질 수 있다. 즉, 정부가 특정 대상, 이를테면 어떤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 수준이 목표수준에 도달하게끔 목표를 세우고 차액만큼 소득이전을 통해 보전한다고 하자. 이 경우 소득이전시 가족·친지 등으로부터의 이전 감소, 즉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부족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의 소득부족액 규모만으로 이전지출 규모를 책정하면 항상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칫 정부의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순효과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포장될 수 있다. 이는 강성진·전형준(2005)등을 비롯하여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정부 이전지출의 목적이 주로 저소득층 보호 및 고령층 생계보전 등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상당히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성명재·박기백(2008)에서 분석하였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조차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분배 효과 중 소득이전(현금급여)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관찰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이며, 구축으로 인해 희생된 보이지 않는 사적이전소득에 의해 잠재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이 효과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명재·박기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매우 강력한 편이다. 이는 앞서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제도가 최근에 시행되었지만 노인층 중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또는 수혜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생계 중 상당부분이 여전히 사인(私人)간의 생계보조금 등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인해 사적이전소득 중 일부가 구축되면 그만큼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된다. 그러므로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순효과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직접적인 분배불평등도 개선 효과에서 사적이전소득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도 악화 효과를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구축효과를 감안한다면 정부의 소득이전정책의 효과성은 순효과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적이전지출 증가를 위한 국민부담의 증가분은 평균적으로 구축효과만큼 경감된다. 소요재원은 국채발행(차입)이나 조세 또는 준조세 부담 증가를 통해 조달된다. 단기적으로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당장의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부담 증가를 통해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이전지출의 증가는 곧 국민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민부담은 흔히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말한다. 그런데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생계보조 등을 목적으로 친지·친척 등에 대한 소득이전도 일종의 부담에 해당된다. 그런데 공적이전지출에 따라 사적이전지출 수요가 구축효과로 인해 일부 감소한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총체적 국민부담은 증세로 인한 부담증가분보다 작아진다. 이는 구축효과가 클수록 순국민부담 증가효과는 더 작아진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측

면에서의 순정책효과는 다소 작아지는 단점도 있지만 총체적인 국민 부담 증가분도 구축효과만큼 완화된다는 장점도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전소득의 공여주체를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일부 이전한다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구축효과의 존재는 공적이전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기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민총부담의 증가 효과는 평균적으로 구축효과만큼 완화되지만 개인별 또는 가구별 부담·수혜의 분포 구조 변동으로 인해 조세저항은 국민부담 완화와 별개로 증가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평균적으로 순부담 증가가 구축효과만큼 완화되더라도 사적이전지출이 감소하는 부류와 증세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는 부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후자로부터의 조세저항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순부담이 구축효과만큼 감소하더라도 사적이전소득의 분포구조와 구축효과의 크기, 공적이전지출 증대를 위한 소요재원 충당시 부담 증가분의 분포구조에 따라서는 조세저항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명재·박기백(2008)에서는 가상적으로 동액의 증세 및 공공지출 증대를 패키지화하여 시행하는 경우 계층별 순부담(또는 순수혜) 분포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 동일한 액수만큼 증세하더라도 어떤 세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순부담(순수혜)의 귀착이 달라지며, 그러한 정책의 선택이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담·수혜의 분포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선택과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가 존재함에 따라 형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복지이전지출의 증가는 사적이전지출 공여자의 행태 변화로 인해 적정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자칫 구축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공공복지지출을 통한 재분배 또는 형평 제고효과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

규모는 현 시점에서 관찰되는 목표치와 가처분소득의 차이에 구축효과에 의해 감소되는 부분을 합산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할 때, 세부담의 부담주체가 변화할 수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총국민부담의 증가효과를 구축효과만큼 감축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는 총체적 국민부담의 증가에 대한 정책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VI. 맺음말

지난 10여년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9)에 의하면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부분과 인구의 고령화 등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소득분배격차 확대 초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에는 두 가지 요인, 특히 그 가운데 경제적 요인에 의해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어 온 측면이 컸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요인에 의한 분배 격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또는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 지출(또는 소득이전)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부담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민부담은 흔히 조세부담 증가분만큼 증가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 때 그 중 일부가 구축효과를 통해 사적이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총체적인 국민부담의 증가효과는 구축효과만큼 상쇄된다.

일반적으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사적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공공부문의 정책효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는 구축효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의 회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공공부문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구축효과를 감안한다면 순효과는 구축효과에 의한 기여도만큼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분석자료의 종류와 모형의 설정,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수치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가계-3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약 13% 정도의 크기만큼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성진 · 전형준,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제10권, 제1호, 2005, pp. 23~46.
- 강성호 · 전승훈 · 임병인,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56집, 제3호, 2008, pp. 75~107.
- 박기백, 『조세감면과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9.
- , 「조세지원모형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논집』, 제11집, 한국재정학회, 1996, 10.
- 성명재 · 박기백, 「조세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56호), 2008.
- · ——,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게재 예정, 한국경제학회, 2009.
- 이만우 · 김진영 · 김대철, 「국민연금기대자산 추정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56호), 2008, pp. 143~186.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미발간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
- Abrams, B. and M. Schmitz,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33, 1978, pp. 29~39.
- Altonji, Joseph G., Fumio Hayashi, and Laurence J. Kotlikoff,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s: Theory

- and Evid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5, No. 6, 1997, pp. 1121~1166.
- Andreoni, J.,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pp. 1447~1458.
- Barrett, Kevin S., “Panel-Data Estimates for Charitable Giving: A Synthesis of Techniques,” *National Tax Journal*, 44, No. 3, September, 1991, pp. 365~381.
- Barro, Robert J.,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1987, pp. 1095~1117.
- Becker, G.,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974, pp. 1063~1093.
- Bergstrom, T., L. Blume and H. Varian, “On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9, 1986, pp. 25~49.
- Blundell, R. and I. Preston, “Consumption Inequality and Income Uncertain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2), 1998, pp. 603~640.
- Cox, Donald and Jimenez, E, “Achieving Social Objectives through Private Transfers: a Review,”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5, 1990, pp. 205~218.
- Cox, Donald and George Jakobson,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Public Finance*, 57, 1995, pp. 129~167.
- Gale, William G. and John Karl Scholz, “IRAs and Household Sa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5, 1994(A), pp. 1233~1260.
- _____ and _____,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 Accumulation of Wealth,”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8, No. 4, 1994, pp. 145~160.
- Jensen, T. Robert, “Do Private Transfers ‘Displace’ the Benefits of Public Transfers? Evidence from South Afric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3, pp. 89~112.
- Johansson, Olof, “Optimal Pigovian Taxes under Altruism,” *Land Economics* 73 (3), 1997, pp. 297~308.
- Kang, Sung Jin and Myoung-jae Lee, “Analysis of Private Transfers with Panel Fixed-Effect Censored Model Estimator,” *Economics Letters*, 80, 2003, pp. 233~237.
- Kingma, B., “An Accurate Measurement of the Crowding-out Effect, Income Effect and Price Effect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pp. 1179~1207.
- Krueger, D. and F. Perri, “Does Income Inequality Lead to Consumption Inequality?: Evidence and Theory,” NBER Working Paper 9202, 2002.
- Ravallion Martin, Dominique van de Walle and Madhur Gautam, “Testing a Social Safety Ne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7, 1995, pp. 175~199.
- Reece, W. and K. Zieschang, “Consistent Estimation of the Impact of Tax Deductibility of the Level of Charitable Contribution,” *Econometrica*, 53, 1985, pp. 271~293.
- Roberts, R. “A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Public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1984, pp. 136~148.
- _____, “Financing Public Goo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1987, pp. 420~437.

- Sandmo, A., "Optim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Externalities,"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7, 1975, pp. 86~98.
- Schiff, J., "Does Government Spending Crowd out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38, 1985, pp. 535~546.
- Warr, P., "The Private Provision of A Public Good Is Independent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Economic Letters* 13,
1983, pp. 207~211.

부록: 200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표

□ 독립유공자

(단위 : 원)

| 대 상 별 | | | 보상금 |
|------------------|-----------|-----------|---------------------------------------|
| 애 국 지 사 | 건 국 훈 장 | 1~3등급 | 3,861,000 |
| | 건 국 훈 장 | 4등급 | 2,056,000 |
| | 건 국 훈 장 | 5등급 | 1,626,000 |
| | 건 국 포 장 | | 1,143,000 |
| | 대 통 령 표 창 | | 751,000 |
| 애 지 유 족 | 건 국 훈 장 | 1~3등급 배우자 | 1,709,000 |
| | 건 국 훈 장 | 1~3등급 유족 | 1,480,000 |
| | 건 국 훈 장 | 4등급 배우자 | 1,260,000 |
| | 건 국 훈 장 | 4등급 유족 | 1,233,000 |
| | 건 국 훈 장 | 5등급 배우자 | 1,026,000 |
| | 건 국 훈 장 | 5등급 유족 | 1,002,000 |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707,000 |
| | | 유족 | 702,000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411,000 | |
| | 유족 | 403,000 | |
| 생 활 조 정 수 당 | | | 가족 3인이하 : 90,000 가족 4인이상 : 100,000 |

□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단위 : 원)

| 대 상 별 | | 보상금 | 간호수당 | 계 | |
|------------------|------------|---------------------------------------|-----------|-----------|-----------|
| 상 이 등 급 | 1급 1항 | 60세 이상 | 2,075,000 | 1,919,000 | 3,994,000 |
| | | 60세 미만 | 1,978,000 | 1,919,000 | 3,897,000 |
| | 1급 2항 | 60세 이상 | 1,963,000 | 1,849,000 | 3,812,000 |
| | | 60세 미만 | 1,866,000 | 1,849,000 | 3,715,000 |
| | 1급 3항 | 60세 이상 | 1,883,000 | 1,778,000 | 3,661,000 |
| | | 60세 미만 | 1,786,000 | 1,778,000 | 3,564,000 |
| | 2 급 | 60세 이상 | 1,685,000 | 596,000 | 2,281,000 |
| | | 60세 미만 | 1,588,000 | 596,000 | 2,184,000 |
| | 3 급 | 60세 이상 | 1,581,000 | | 1,581,000 |
| | | 60세 미만 | 1,484,000 | | 1,484,000 |
| | 4 급 | 60세 이상 | 1,341,000 | | 1,341,000 |
| | | 60세 미만 | 1,244,000 | | 1,244,000 |
| 5 급 | 60세 이상 무의탁 | 1,305,000 | | 1,305,000 | |
| | 60세 이상 | 1,128,000 | | 1,128,000 | |
| | 60세 미만 | 1,031,000 | | 1,031,000 | |
| 6급 1항 | 60세 이상 무의탁 | 1,215,000 | | 1,215,000 | |
| | 60세 이상 | 1,038,000 | | 1,038,000 | |
| | 60세 미만 | 941,000 | | 941,000 | |
| 6급 2항 | 60세 이상 무의탁 | 1,141,000 | | 1,141,000 | |
| | 60세 이상 | 964,000 | | 964,000 | |
| | 60세 미만 | 867,000 | | 867,000 | |
| 7 급 | 60세 이상 무의탁 | 568,000 | | 568,000 | |
| | 60세 이상 | 391,000 | | 391,000 | |
| | 60세 미만 | 294,000 | | 294,000 | |
| 전 상 수 당 | | 19,000 가산 | | | |
| 생 활 조 정 수 당 | | 가족 3인이하 : 90,000 가족 4인이상 : 100,000 | | | |

○ 유족, 기타

(단위 : 원)

| 대 상 별 | | 보상금 | |
|----------------------------------|-----------------------------|-------------------------------------------|--------------------------------|
| 유 | 배 우 자 | 무 의 탁 | 1,177,000 |
| | | 무의탁부모부양 | 1,052,000 |
| | | 60세 이상 | 1,052,000 |
| | | 일 반 | 903,000 |
| |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604,000 |
| | | 무의탁부모부양 | 479,000 |
| | | 60세 이상 | 479,000 |
| | | 일 반 | 330,000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 2인 양육 185,000 3인 양육 370,000 |
| | 족 | 부 모 | 무 의 탁 |
| 독 자 사 망 | | | 1,162,000 |
| 60세 이상 | | | 985,000 |
| 2 인 사 망 | | | 2,050,000 |
|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 일 반 | 888,000 |
| | | 무 의 탁 | 587,000 |
| | | 60세 이상 | 410,000 |
| | | 일 반 | 313,000 |
|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 | 1,048,000 | |
|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 478,000 | |
| 미성년 제대양육 수당 | | 2인 양육 370,000 | |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인 | 60세 이상 무의탁 | 1,141,000 | |
| | 60세 이상 | 964,000 | |
| | 60세 미만 | 867,000 | |
| 6·25 자 녀 수 당 | | · 제적유자녀 : 693,000, · 승계유자녀 : 600,000 | |
| 무 공 영 예 수 당 | | · 140,000 | |
| 생 활 조 정 수 당 | | · 가족 3인이하 : 90,000 · 가족 4인이상 : 100,000 | |

고엽제 수당

(단위 : 원)

| 대 상 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
| 후유 의 증 수 당 | 630,000 | 466,000 | 306,000 |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125,000 | 872,000 | 702,000 |

 참전명예수당 : 80,000원

<국문요약>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성명재 · 박기백

지난 10여년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복지지출이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흔히 조세부담의 증가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복지를 시급히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연금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구축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한다면, 공적이전 확대를 목적으로 세금이 증대되더라도 사적이전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면 세금의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사적이전지출의 감소로 상쇄되어 총체적 부담의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증대를 통한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종종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이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 전체를 공공부문에 의한 재분배 역할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축효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공공부문의 재분배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구축효과를 감안한 순효과는 구축효과에 의한 기여

도만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분석자료의 종류와 모형의 설정,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수치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약 13% 정도 사적이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Effects of Public Transfers on Private Transfers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Myung Jae Sung & Ki-baeg Park

Over the last decade,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sharply increased together with sharply increasing national burden to cope with rapidly expand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national burden increases as much as the increase in tax burden. Therefore, the recent increase in welfare expenditure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its overspeed with the resulting heavy fiscal burden.

Sometimes, it is quite possible that government or public welfare expenditures including public pension layout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rendered between relatives and/or friends to support living expenses, which are quite popular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social security systems are not sufficiently established. If there exist strong crowding-out effects betwe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the overall net burden of individuals will not increase much when an increase in public welfare expenditures is financed by the tax increase since private transfers will decrease due to the crowds-out. In this case, the speed of tax increases may not be a serious problem, since total burden of individuals can increase at a moderate rate due to the decrease in private transfers. The only differences are reallocation of burdens between individuals and, also, who bears the

costs of welfare transfers between government and individuals. In this sense, the political pressure or burden can be mitigated by the crowds-out betwe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In practice, the government role of income redistribution could often be overvalued without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to the extent of redistributive effects of crowded-out private transfers.

In this report, we find that public transfer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by about 13 percents in Korea,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the year 2008.

〈著者略歷〉

성명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준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研究報告書 09-01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성명재·박기백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축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44-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